



“고민에 고민을 더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입니다”

## 서울의 미래를 묻다 도시재생으로 답하다

서울의 미래를 묻는 질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도시재생으로 답합니다.  
시민들의 바람대로 도시는 새로워지고  
더불어 행복한 주거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시재생으로  
서울은 지금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SH가 먼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함께 합니다.

서울시민의 평생친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 함께 만드는 시민 참여형 도시재생



걸어서 10분 이내  
각종편의시설



지역경제 활성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노후 불량 건축물  
도시환경 정비



저이용 공공시설  
토지활용사업



일자리 창출요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고속도로에서

# 신의 한수

피곤할 때 졸음쉼터에서  
한숨 자는 것이 신의 한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깜빡 졸음이 깜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 피곤할 때는 졸음쉼터를 찾아주세요.  
잠깐의 휴식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킵니다.

전국 212곳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쉼터 설치 후, 한해 고속도로  
사고 건수 7% 이상 감소 / 사망자 수 32% 이상 감소  
(2016년 말 기준)

NEW COLLECTION

# jante





콤직한 건더기부터 맛까지,  
한 컵에!! '오뚜기 컵밥'

(주)오뚜기는 지난 2004년 즉석밥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오뚜기 밥'은 뛰어난 맛과 품질,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지금은 30%가 넘는 점유율로 시장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간편성을 강조한 컵밥 제품으로 김치참치덮밥, 제육덮밥 등 6종을 출시했고, 3개월 뒤인 12월에는 진짬뽕밥, 부대찌개밥, 올해 들어서는 쇠고기미역국밥, 북어해장국밥, 사골곰탕국밥, 양송이버섯카레밥 등 7종을 추가 출시하면서 총 15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컵밥'은 메뉴별 고유의 맛을 강화하고, 콤직한 건더기를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3분요리에서 입증된 오뚜기만의 조미 노하우로 농축 액상소스를 사용(쇠고기미역국밥, 북어해장국밥, 사골곰탕국밥)하여, 국물 맛이 더욱 진하고 깔끔합니다.

# 특 SORi 나는 금융

10개국어 실시간 특번역부터 AI인공지능 음성송금 SORi까지-  
위비플랫폼, 얼마나 더 똑똑해질거야?



번역으로  
외국어 공부도 하고~



음성으로  
송금도 하고~



**위비뱅크**  
음성인식시행권부터 간편한 송금, 대출, 환전, 음악방송과 게임까지! 쉽고 재미있는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톡**  
10개국어 실시간 특번역, 귀속말, 평메시지, 여행, 맛집/재테크정보 등 스마트한 모바일 메신저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로바로! 달콤한 꿀머니가 쏟아지는 통합멤버십 서비스



**위비캠**  
보정, 필터, 스티커, 뮤직피쳐링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위비톡 전용 셀카 APP

커버스토리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꿔야”

정책의 집행과 관리를 맡은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더니 조세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은 없다”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준비된 로드맵이 없고 단기 가격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모든 것은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 투기든 투자든 정부 태도에 심리적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금처럼 일부지역을 놓고 숨바꼭질할 때가 아니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꿔야



경실련 | 공동대표 선월몽산 김원배 김대래 중앙위원회위원장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 양혁승 정책위원장 소순창 사무총장 윤순철  
월간경실련 | 발행인 윤순철 편집인 채준하 편집기자 윤은주  
발행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고번호 종로마 00088 정보간행물 전화 02)766-5627 팩스 02)741-8564~5  
편집디자인 ㈜현대아트컴 인쇄 ㈜현대아트컴 1990년 5월 24일 등록 서울라10131 2017년 9월 25일 발행

CCEJ(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26-9 Dongsung 3gil Chongro-gu, Seoul, Korea  
Phone : 82-2-766-5627 Fax : 82-2-741-8564-5 http://www.ccej.or.kr

# CONTENTS

동승동 칼럼

10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꿔야 / 윤순철

특집

12 ① 2017 정기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 정택수

이슈리포트

28 ① 국토부 의지로 할 수 있는 집값 안정책, 분양원가공개가 시작이다 / 김성달  
34 ②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 남은경

시사포커스

38 ① 국민 참여 없는 개헌을 반대한다 / 김삼수  
41 ② 개헌, 늦더라도 바로하자 / 이광진  
43 ③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 권오인  
45 ④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응은 북핵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조성훈  
47 ⑤ 2017 세법개정안, 기대와 우려 / 오세형  
50 ⑥ 특혜 위에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 국민은 불안하다 / 최예지  
54 ⑦ 소비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집단소송제 / 권태환  
56 ⑧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 박지호



34 이슈리포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56 시사포커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기자회견

지역이야기

58 ① 지방정부 공무원 공로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광현  
62 ② 해경 부활, 인천 환원! / 김성아

우리들 이야기

64 ① 제14기 4차 중앙위원회 현장스케치 / 윤은주  
67 ② 20대 회원을 만나다 / 윤은주  
73 ③ 뽀빠추니 정혜진 작가 인터뷰 / 윤은주  
80 ④ 문화산책 -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는 그만! 영화 <트럼보> / 허재필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82 경실련 일일보고  
84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85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64 우리들 이야기  
제14기 4차 중앙위원회  
현장스케치



73 우리들 이야기  
뽀빠추니 정혜진 작가 인터뷰

## 부동산 정책기조를 바꿔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부동산 정책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어부가 투망을 던져 놓고 물고기의 흐름을 관찰하는, “이것으로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센 대책을 내 놓겠다” 식이다. 그리고 정책의 집행과 관리를 맡은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은 빨리 집을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더니 조세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보유세 인상은 없다” 부처간에 엇박자를 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준비된 로드맵이 없고 단기 가격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국토개발 과정에서 넘쳐나는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지 못하는 미흡한 제도와 정책들이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다. 또한 시민들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노후 대책이든 자산 증식이든 이유 불문하고 은행 빚을 내서라도 땅과 집을 소유하려는 집착을 만들었다. 거의 전 재산을 부동산에 묶어 둬으로써 겉으로는 부동산 투자를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가격 급등을 바라는 독특한 이중심리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요즘은 투기라는 용어도 실종되어 투자로 합리화 되고 TV에서는 투자를 부추기는 호객 방송이 온종일 방영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토지나 집이 아닌 부동산에 사즉생으로 달려드는 이들에게 핀셋이나 족집게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은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이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밑그림은 없고 단기적 가격관리 처방만하는 기조’를 바꿔야한다.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투기는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토지공공성에 대한 철학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고 거품을 걷어내야 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안정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기조, 합리적인 단계별 방안, 지속적이고 통일된 추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기 처방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최근 보유세 논란을 보자.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그리고 여당 간의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엇박자는 보유세의 효과를 투기억제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산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역할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유세는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재산가들에게 소유한 만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의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모든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부동산 정책적 관점에서 본다면, 부동산 편중과 자산의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는 보유세의 실효세율 수준에 따라 다른 부동산 정책의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 비록 많은 논란과 저항으로 무력화되었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것 즉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 하는 것으로 자산격차 해소와 조세 형평성 강화의 의미가 있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터다지기인데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는 집터를 다지는 것이다. 정부가 2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중과한다면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주택공급 효과가 발생한다. 다주택자들이 거주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된다면 매매시장에서는 새로운 공급대책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금의 과세표준(과표)을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 처럼 100%로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과 방식을 인별로 전국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유세 강화의 단계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으나 아무런 계획이 없다. 보유세 강화라는 국민적 합의 위에 수요억제와 가격관리제를 병행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주택의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을 소득 위주로 전환하여 가계 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한다면 주택을 쇼핑하는 갭투자 행태를 차단할 수 있고,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대폭 인하하며, 다주택자들이 세놓고 있는 임대주택에 소득과세를 하고, 전월세임대료 상승 상한제로 임대 시장을 안정화하는 등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조가 확고히 될 때 8.2대책을 비롯하여 5년만 버티자는 심리는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은 정부 의지에 달려있다. 투기든 투자든 정부 태도에 심리적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금처럼 일부지역을 놓고 숨바꼭질할 때가 아니다.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근원적인 문제에 천착해야 한다. 

# 2017 정기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정택수 정치사법팀 간사  
wild@ccej.or.kr

지난 9월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100 일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첫 예산에 대한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및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입법이 필요하며, 465건은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권 5년의 성패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수년째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날 수 없고 있는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충제 달걀, 농약성분 닭, 독성 생리대 등 먹거리와 생필품의 안전마저 비상이 걸리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제 1야당은 언론문제를 빌미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국회논의는 한동안 전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우리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구시대적인 경제정책을 새롭게 개선하고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40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 〈2017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법안〉

### I. 과거사/세월호 진상규명

-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 ②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 ③ 세월호 진상규명(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II. 권력기관 개혁

- ④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 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국가정보원법 개정)
- ⑥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개정)

### III. 정치/선거제도 개혁

- ⑦ 독일식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
- ⑧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인사청문회법 개정)
- ⑨ 공영방송 정상화(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 ⑩ 선거연령 18세 하향(공직선거법 개정)

### IV. 부정부패 근절

- ⑪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정)
- ⑫ 징벌배상법 도입(징벌배상법 제정)
- ⑬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공정거래법 개정)
- ⑭ 이해충돌방지법 도입(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⑮ 상품권 관리·감독 강화(상품권법 제정)
- ⑯ 리베이트 근절(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V. 재벌 경제력집중 완화

- ⑰ 기존 순환출자 해소(공정거래법 개정)
- ⑱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 ⑲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개정)
- ⑳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상법 개정)

- ㉑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상법 개정)
- ㉒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관세법 개정)
- ㉓ 법인세 인상(법인세법 개정)

**VI. 민생안정**

- 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특별법 또는 상생법 개정)
- ㉕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 ㉖ 등지내몰림 방지(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㉗ 1주택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주택도시금융법 개정)
- ㉘ 적정임금제 도입(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 개정)
- ㉙ GMO 안전표시제 도입(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VII. 서민주거 안정**

- ㉚ 후분양제 도입(주택법 개정)
- ㉛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 ㉜ 소득하위 20% 이하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급여법 개정)
- ㉝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토지임대건물분양 특별법 개정)
- ㉞ 전월세상한제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㉟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㊱ 직접시공제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㊲ 보유세 강화(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 ㊳ 감리대가 예치제 도입(주택법 개정)

**VIII. 한반도 평화 구축**

- ㊴ 한반도 긴장고조·전쟁위협 중단 (한반도 긴장고조·전쟁위협중단 촉구 결의안)
- ㊵ 군인권보호관 설치(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경실련이 선정한 8대 분야 및 40대 개혁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I. 과거사/세월호 진상명**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방부가 셀프조사 하도록 맡긴다면 형식적인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독립적인 특별 기구를 설치해 5.18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5년 12월 28일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10억엔을 받기로 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누구보다 중요한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등재·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굴욕적인 외교협상방식에서 벗어나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하는 한편 바람직한 재협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3. 세월호 진상규명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015년 세월호 특별법에 의거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조위의 활동은 청와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이 강제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월호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별조사위가 충분한 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II. 권력기관 개혁

###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지난해 말 헌정사상 최악의 사태로 손꼽히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인물에 대한 수사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 국민적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5.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 국가정보원법 개정

국정원과 같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인권침해를 빈번히 자행하였으며,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내적인 방첩 업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국정원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을 부여하여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6. 검경 수사권 조정 -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은 ‘검찰 정치화’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검찰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검·경간의 수사권을 조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이 경우 검찰은 공소 제기과 유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2차적·보충적 수사로 한정합니다.

## III. 정치/선거제도 개혁

### 7.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 공직선거법 개정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당선자를 찍지 않은 표는 모두 사표처리 됩니다. 때문에 실제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 간에는 현저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지역구 의원 수와 비교하여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점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과 성장을 방해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지지율이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8.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 인사청문회법 개정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과정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청문기준의 결여, 시간부족,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허위진술 등으로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청문회 운영을 위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제출요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 공직을 확대하고, 현행 20일인 청문기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진술 등으로 유죄확정시 해당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9. 공영방송 정상화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최근 공영방송 KBS, MBC 구성원들이 지난 정권들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경영진들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채용 경우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도록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 구성을 여야가 각각 추천하여 이루어지도록 인사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주요사안 의결을 이사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10. 선거연령 18세 하향 - 공직선거법 개정**

세계적으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47개국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이나 선거법상 선거권을 부여받는 연령은 19세입니다. 18세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의식과 주인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IV. 부정부패 근절**

**11. 집단소송법 도입 - 집단소송법 제정**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와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업이 위법행위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의 수준이 적발로 받는 처벌수준보다 현저히 많은 반면,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이나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한데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구성원의 청구이유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집단소송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분야로 확대해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12. 징벌배상법 도입 - 징벌배상법 제정**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에 한정하다 보니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징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반 징벌 배상제도가 필요합니다. 징벌배상법은 개별법에 관련 내용을 각각 명시하는 것보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하는 독립 입법형태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13. 공정위 전속고발권 및 3개 기관 고발요청권 전면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은 공정위에 의해 독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합 등 중대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물론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14.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조항 중 하나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인데, 정치권은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는 반부패 정책의 핵심이자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공직 윤리규범입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도 '이해충돌 방지 의무' 조항이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15. 상품권 관리·감독 강화 - 상품권법 제정**

1999년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 등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처가 없어지면서 발행·유통·상환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상환상품권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되, 상품권의 원권리자를 보호하면서,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6. 리베이트 근절 -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010년에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제도화되었는데 감독기관의 봐주기식 처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자격정지 기한을 연장하고, 제약회사 또는 약국 등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퇴장방지약품 등 부득이하게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소위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당하게 확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V.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17. 기존 순환출자 해소 - 공정거래법 개정**

순환출자는 지배주주가 직접지분을 늘리지 않고도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부실을 전 계열사로 전이시킬 수 있어 자칫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으로 인해 2014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지만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여 삼성, 현대차 등 대다수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법 시행 이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해소토록 해야 합니다.

**18. 지주회사의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기준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

지주회사 제도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87년부터 금지되어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1998년부터 다시 허용됐습니다. 2007년에는 재벌들의 요구에 따라 지주회사 부채비율 및 자회사 이하 주식보유 비율 등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지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보유하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회사

아래에 존재하는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개정하여, 지주회사-자회사라는 2단계 출자구조로 유도해야 합니다.

**19.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공정거래법 개정**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익법인은 자산 총액 중 30% 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률이 예금 금리에 비해 매우 낮은데도 주식을 처분해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서는 동일인이 공익법인과 회사를 지배할 경우 공익법인의 지분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 지주회사 전환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방지 - 상법 개정**

작년 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검토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그 회사의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귀속되어 지주회사는 자사주 보유비율만큼 그 회사의 지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자사주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활용됩니다.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기업이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배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21.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의무화 - 상법 개정**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하에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제도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총수일가들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총수일가의 우호적인 주주들로 의결이 진행되는 한편 소액주주는 참여조차 어려워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수일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고, 사내·사외이사 구분 없이 모든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22. 재벌 특혜 시내면세점 제도 개선 - 관세법 개정**

시내 면세점은 턱없이 낮은 수수료(대기업 관련 매출대비 0.05%)로 인해 선정되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과도 불투명한 특혜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16년 신규 면세점은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하 이후 성급히 추진되어, 일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대가로 선정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면세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 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시내면세점 투명성 확립과 국민 알권리를 위해 면세점 사업 부문을 별도 공시하도록 의무화를 하여 사업권이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23. 법인세 인상 - 법인세법 개정**

국정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7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근로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만의 증세는 세수효과 측면에서는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5000억원 이하는 25%, 5000억원 초과는 27%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추진이 어려다면 과표구간 200억원 초과 기업부터 25%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VI. 민생 안정**

**24.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 특별법 제정 또는 상생법 개정**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4개 품목 중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순대, 금형, 전통떡, 김치, 두부 등 49개 품목이 2017년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만료를 대비해 포스트 적합업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법 형태 또는 상생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은 생계형 품목을 사업화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25. 법정 최고이자율 하향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00조원을 넘고 있는데,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낮은 서민층의 사금융 및 대부업 시장의 이용이 급증하였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금지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저금리 상황임에도 합법적으로 등록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들에게 27.9%라는 고금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 전체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원화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와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연 20% 미만으로 동일 규제해야 합니다.

**26. 등지 내몰림(Gentrification) 방지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가 낮은 주거 및 상업지역의 저소득층이 새로 형성된 고소득 계층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현상입니다. 낙후한 지역이 활성화되면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지지만, 임대료 상승으로도 이어져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이주와 지역커뮤니티의 붕괴를 일으킵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연장 시 보증금의 대폭적인 상승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27. 1주택자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 주택도시보증법 개정**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가치와 대출상환액의 차액이 발생할 시 담보물인 주택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추가 상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무한책임은 소비자의 가계재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한정된 '내집마련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을 1주택자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8. 적정임금 도입 -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

건설노동자 대부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법다단계 하도급 노

동자는 더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발주처의 공사비 책정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는 사무직 노동자보다 낮는데 이들이 받는 임금은 이보다도 낮게 책정됩니다. 건설노동자의 연간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사무직 노동자 연봉수준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장의 일일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시중노임단가를 인상하고 건설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조사결정 권한을 노동조합 등으로 이관하여 단가를 인상해야 합니다.

**29. GMO완전표시제 도입 - 식품위생법·건강식품법 개정**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입니다. 여기에 사료용을 포함하면 약 1천만 톤에 이릅니다. GMO를 사용한 가공식품에는 GMO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작 내가 먹는 식품에 GMO농산물 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전자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Ⅶ. 서민주거 안정**

**30. 주택 완공 후 분양제 이행 - 주택법 개정**

수억원이나 하는 주택을 짓지도 않고 판매하는 선분양제는 부실시공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집값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80% 완공 후 분양제를 의무화하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80% 완공 후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선분양 시에는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1~2년 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분양여부를 결정하는 주택예약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31.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개정**

선분양제를 통해 고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주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원가를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 신고하여 불로소득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1999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강남아파트값은 한 채당 10억원이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임금은 연간 2천만원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무분별한 고분양 책정 근절, 주택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설부패 근절 등을 위해 분양원가는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아파트 61개 항목에 대한 원가 공개로 분양가 인하효과를 높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32. 소득하위 20% 이하 무주택서민 월평균 20만원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법 개정**

2016년 주거비 지원은 월평균 11만원씩 81만가구를 대상으로 1조원에도 못 미칩니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의 43% 이하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2016년에는 3천억원의 불용액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81만 가구 대상으로 9,399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주거급여 확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20% 이하 기준 무주택자(약 200만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현재의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33.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 토지임대건물분양특별법 개정**

정권마다 수십만호 씩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재 장기공공주택 재고량은 100만호로 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주택 대부분이 분양전환 주택이고, 30년 이상 장기임대 가능한 공공주택은 택지 및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20년 이상 임대무기기간을 설정하고,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지에 대한 민간매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거나 주택도시보증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임대료 인상률 및 분양전환가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34.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경실련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매달에 278만원씩 상승했고, 전세금 마련을 위해 서민들은 서울은 월 181만원, 수도권은 월 99만원을 빚을 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세입자 요구시 2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연 5% 이내로 규정하는 임대료 상승률을 2년에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35.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우리나라 자가주택 보유율은 60%로 263만가구가 908.6만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가구당 평균 3.5채씩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4만명에 불과하고 임대소득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하며, 전월세 소득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를 실시하고,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6. 직접시공제 도입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대부분 재벌건설사 중심의 종합건설업은 원도급자이며, 중소건설사 중심의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벌건설사, 중소건설사 모두 직접 시공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최종 하도급자인 건설노동자와 중장비업자들은 각종 안전사고와 임금체불, 불법해고 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종 하도급자로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 공공사업부터 원도급업자가 50% 이상 직접시공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로써 건설사는 전문시공사로 경쟁력을 높이고, 건설노동자는 원도급업자와 직접 계약함으로써 고질적인 체불, 낙장지급, 안전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37. 보유세 강화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

2014년 걷힌 재산세 및 종부세는 12.5조원으로 같은 년도 한국은행이 밝힌 부동산 가격 7,000조원과 비교하면 0.2%에 불과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 모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과거 모든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고 말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현재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다 공제를 폐지하며, 다주택자 증과세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38. 감리대가 예치제 도입 - 주택법 개정**

주택감리제도는 94년부터 소비자를 위해 감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감리자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공무원의 지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대가는 건설사업주로부터 받고 있어 건설사와의 관계가 갑과 을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나 공공을 위한 역할보다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치중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감리비(주택분양가에 포함)를 관할지자체에 예치 후 공공이 직접 지급한다면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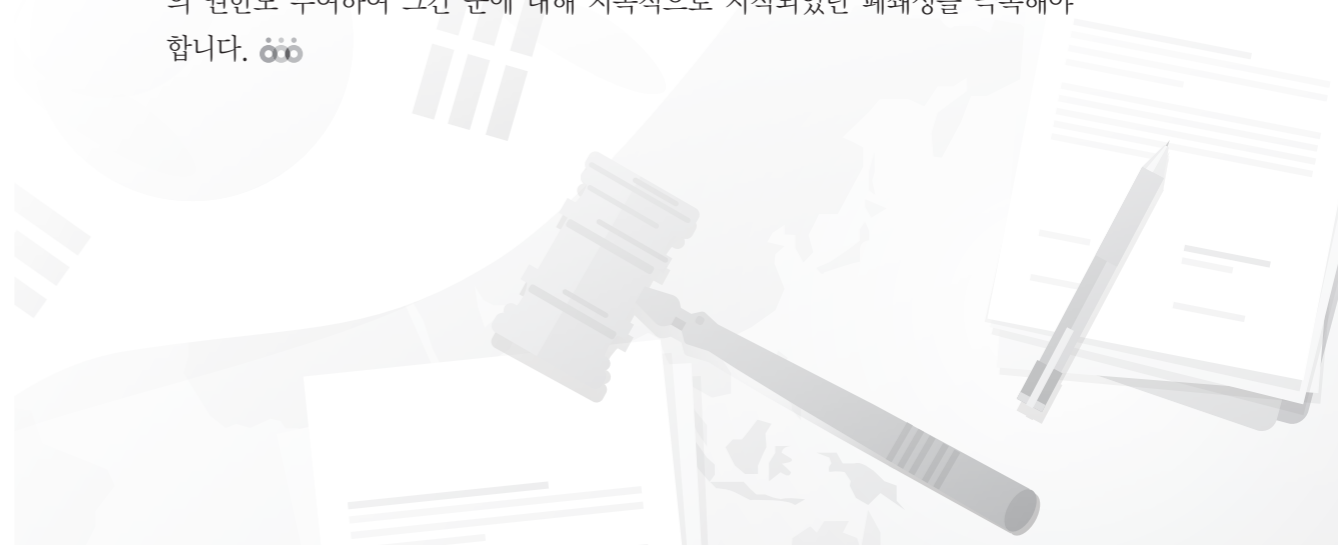
**VIII. 한반도 평화 구축**

**39.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위협 중단 -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위협 중단 촉구 결의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발적인 말싸움을 넘어 군사적 실행계획 등을 공개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차원에서라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게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외교적 노력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대강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40. 군인권보호관 설치 -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제정**

장병 인권개선을 위한 군인권보호관제도(군옴부즈만)는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시기구의 설치 기관,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논란으로 관련법의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침해와 군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군 밖의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권, 부대방문권, 진술청취권 등의 권한도 부여하여 그간 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폐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



# 국토부 의지로 할 수 있는 집값 안정책, 분양원가공개가 시작이다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팀장  
seongdal@ccej.or.kr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2000년 이후 노동자의 임금상승액은 16년간 1,500만원에 그쳤지만 강남집값은 한 채당 평균 6억원이나 올랐고, 국민의 70%인 3,500만명은 땅 한 평조차 없지만 전체 토지의 84%를 보유한 상위 10%는 땅값상승에 의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독점해왔다.

부동산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양극화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헬조선 탈출이 촛불광장의 명령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8.2대책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을 떨어트렸지만 풍선효과도 나타나며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국민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다주택자만 투기범으로 지목할 뿐 건설사, 유주택자 등에 만연화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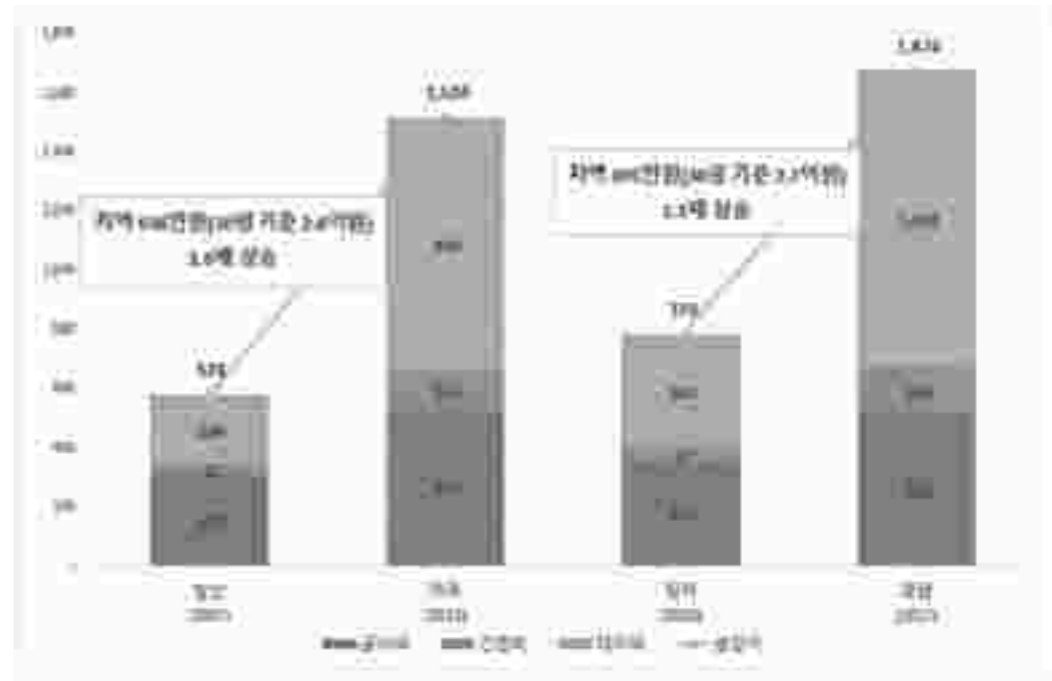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확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조차 분양가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 비슷한 입지에 SH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분양가 2배 차이

강서구의 마곡, 발산, 송파구의 장지, 오금은 모두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공공주택이지만 장지는 분양원가가 61개 항목이 공개됐으며, 마곡, 오금은 12개 항목만 공개됐다. 2007년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에 대해 적용됐던 61개 항목별 분양원가 공개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2007년에 분양된 발산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578만원이었으나 2015년 분양된 마곡지구는 평당 1,514만원이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발산보다 1.6배가 상승, 평당 936만원,

(단위 : 만원/평)



30평 기준 2억8천만원이 더 비싸졌다. 2008년 분양된 장지도 분양가는 평당 779만원이었지만 2017년 분양한 오금은 장지보다 1.1배가 상승한 1,674만원으로 평당 895만원, 30평 기준 2억7천만원이 상승했다.

같은 SH공사가 공급하고, 입지도 비슷한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2배로 상승했지만 분양원가 공개가 1/5 수준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승 원인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주택 분양가만 비싸지고 있다.

##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이 건축비 거품을 조장

정부는 8.2대책 후속조치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과열시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분양가상한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의 합으로 결정된다. 택지비는 매입가 및 감정가 기준이고, 기본형 건축비는 2005년 평당 339만원으로 고시된 이후 매년 평균 5%씩 인상되어 2017년 현재 598만원까지 상승했다.

〈표 1〉 정부가 공개한 실제 건축원가와 기본형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분양평당)

		발산1단지	장지5단지	강남A1	서초A2	평균
		2007	2008	2010	2010	
실제 건축 원가	소계	338	376	437	398	
	공사비	296	327	400	346	
	간접비	42	49	37	52	
기본형건축비		434	456	485	485	
차액		96	80	48	87	78만원
대비		1.3배	1.2배	1.1배	1.2배	1.2배

주 1) 공사비는 발산, 장지는 도급 기준, 서초는 준공기준임

2) 간접비는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간접비

하지만 LH 및 SH가 공개한 실제 건축원가와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경실련의 정보공개 소송으로 공개된 SH공사의 실제 평당 건축원가는 발산이 338만원, 장지가 376만원이고, LH 공사가 국감자료로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실제 건축원가는 각각 437만원, 398만원이다. 하지만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는 실제 건축원가보다 최저 48만원~96만원이나 비싸고, 1.2배나 된다.

근거없는 가산비 허용도 건축비 상승을 부추긴다.

○ 2010년 이후 수도권에서 LH공사 및 SH공사가 입주자모집 시 공개한 건축비는 평당

〈표 2〉 소비자 부담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 비교

(단위 : 만원/분양평당)

구분	서초 (A2) (‘10)	위례 -11 (‘11)	강남 (A4) (‘12)	마곡 -1 (‘13)	화성동탄2 (A7) (‘14)	구리갈매 (B3) (‘15)	하남감일 (B7) (‘16)	송파오금 -2 (‘17)	비고
공개 건축비	541	588	617	567	593	631	643	670	
공사비	448	481	551	499	422	525	536	505	
간접비	52	70	44	68	43	48	47	106	
소계	500	551	595	567	465	573	583	611	
가산비	41	37	22	-	129	58	60	59	
기본형 건축비	485	502	520	531	544	562	574	598	연평균 3% 상승
차액	56	86	97	36	49	69	69	72	평균 67만원
사업자	LH	LH	LH	SH	LH	LH	LH	SH	

주 1) 공사비는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

2) 간접비는 설계·감리 및 기타 사업부대비비용의 합

3)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치 등 정부가 추가로 인정하는 항목별 비용

자료) 각 지구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541만원~670만원으로 해당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36~97만원까지 비쌌다. 소비자가 부담한 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싼 이유는 근거없는 가산비 때문이다. LH와 SH가 공개한 가산비는 마곡지구(2013년 분양)는 “0”원이었지만 화성동탄2(2014년 분양)는 129만원까지 책정되는 등 지구별 편차가 매우 크다. 연도별로도 일관성이 없으나 세부내역 비공개로 소비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다.

**분양원가 공개되면 강남에도 주변 시세의 1/3 수준인 평당 1천만원대에 공급 가능**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분양거품이 줄어 소비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낮아진다. 지난 2016년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복합개발 예정인 수서 공공주택지구에는 2,8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언론에 보도된 LH공사의 평균 보상비(평당 4~500만원)와 서울시가 추진한 22개 택지지구의 평균 개발비용(평당 141만원)과 택지 유상공급면적 비율(평균 53%) 등을 고려하여 수서 지구의 조성원가를 추정한 결과 평당 1,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금융비용 등(조성원가의 10%)을 감안한 후 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아파트의 토지비는 평당 616만원이다. 건축비는 SH, LH가 공개한 건축원가(평당 338만원~437만원)를 고려하여 평당 500만원을 적용하면 수서지구의 분양가는 평당 1,116만원으로 추정된다. 수서동 평균 시세 2,900만원과 비교하면 시세의 38% 수준이고, 최근 분양한 인근지역의 송파 오금지구(평당 1,674만원), 성남고등지구(1,797만원)보다 5~600만원 낮다.

〈표 3〉 수서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적정 분양가 추정 (단위 : 만원/평당, 만원/분양평당)


구 분	예상 조성 원가	용적률	분양가			주변 시세	시세 대비	
			소계	토지비(토지임대료)	건축비			
공공 분양	평당	1,400	250%	1,116	616	500	2,900	38%
	10평			11,160	6,160	5,000		
	15평			16,740	9,240	7,500		
	20평			22,320	12,320	10,000		
토지 임대	평당	1,600	250%	500		500	2,900	17%
	10평			5,000	월15만원	5,000		
	15평			7,500	월23만원	7,500		
	20평			10,000	월31만원	10,000		

- 주 1) 조성원가는 언론에 보도된 토지보상비 평당 500만원, 서울시 22개지구의 택지조성원가 내역을 고려하여 조성공사 등 개발비용 평당 200만원, 유상공급면적 비율 50%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
- 2) 분양가의 토지비는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성원가의 110% 적용 후 용적률 250%로 계산
- 3) 토지임대료는 토지비의 3%(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참조)
- 4) LH 공사가 시공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준공건축원가는 평당420만원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에 월 31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추정, 주변 시세의 1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분양가 거품을 막을 수 없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는 불가능하다. 다행인 것은 최근 공공 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6개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김현미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된 이후 공급된 공공주택 지구 분양원가 공개도 필요하다. 이미 과거에도 LH공사가 17개 지구의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를 공개, 그동안의 땅장사 내역을 밝히며 시민들에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기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주택정책의 철학을 밝힌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진정성 있는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분양원가 공개

2017년 9. 10월호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은?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  
nari@ccej.or.kr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9월 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되면 10월 지자체의 사업계획 준비와 공모를 거쳐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110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투기과열 우려와 관 주도·졸속·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자 대상지를 70개로 축소했다.

경실련은 지난 7월 정부안에 대해 ‘관 주도·졸속·예산나뉘먹기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각 사업유형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분명해 세금 낭비이고, 3개월 내에 공모를 통해 110개 사업지를 선정하려면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사업은 요원하며, 투기세력들의 투기 조장이 일어날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여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수정된 계획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자체 주도하에 1개월 내에 사업공모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주민참여는 더욱 어려워졌고, 전문가와 용역업체 의존 가능성은 높아졌다. 기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등 객관적 평가도 없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을 재탕해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과오를 반복할 우려가 높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단기 토건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과거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급조된 개발사업은 모두 실패했다. 촛불 민심이 만든 현 정부가 과거 사업 재탕으로 실수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더욱 클 것이다.

또 다시 경기부양을 위해 도시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대책 및 젠

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재생정책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수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된 토론회는 시민단체, 학계, 정부관계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그간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 ‘도시권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제하는 류중석 교수

〈도시권과 도시재생〉의 주제로 발제를 맡은 류중석 교수는 도시는 공유재이므로 도시민은 다양한 기회, 자원,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유엔 하비타트 Ⅲ의 ‘도시권’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도시정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며, 특히 지가상승 및 임대료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포용도시를 위해 다양한 소득계층을 포용하는 주거가 제공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유사한 방식은 예산 소진 이후의 대책이 부재하므로 지양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발제한 이제선 교수(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는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이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람중심, 현장중심,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자로 낙수효과와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신에 가까우며, 단순한 도시정비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으로 생각해도 실패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국토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추진되었지만 전국을 부동산 투기화하고 기성시가지 노후화를 가속화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에 집착해 문제가 노정된 도시재생사업을 확대 재생산하기보다는 최소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짧은 계획 수립기간, 관 주도, 주민참여 부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발표한 남은경 팀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인 서울의 서촌과 연남동, 대구의 방천시장과 광주의 1913송정시장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각종 재생사업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으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선결조건으로 세입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과 ‘특성 있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 박준형 과장은 도시의 불평등 문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들 그리고 동지내몰림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상생협약과 공공임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 등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연구원 김태현 박사는 사업의 개수와 예산 명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공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주제로 8월 28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홍경구 교수(단국대 건축학과)는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대도시에 적합한 유형으로 소규모 지방도시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사업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은 도시재생사업이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덕 본부장(LH 도시재생본부)은 경제기반형 사업에서 LH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이 주인공이 되지 못함을 비판했고, 새롭게 지어지는 시설들이 도시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한 의문과 불필요하게 높은 건축비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봉문 교수(도시개혁센터 이사장/목원대 도시공학과)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더 많은 논의와 의견을 수렴해야 성공한 사업이 될 수 있다면서 오늘의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경실련도시개혁센터도 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 국민 참여 없는 개헌을 반대한다.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에 부쳐 -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peace@ccej.or.kr

국회 개헌특위는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9월 말까지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에서 총 11차례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헌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조차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장악한 채 국민들의 참석과 발언은 제한되고 있어 ‘국민대토론회’라는 이름을 무색케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으며, 주권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 국회는 국민참여 없는 정치적·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 3대 원칙도 제시했다. 연말까지 여야 합의의 헌법 개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3월 전에 발의와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고, 3월 전에 발의를 할 계획이라면 연말이나 늦어도 2월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개헌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떻게 국민 참여를 이룰 것인지 고민 없이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해 국민참여 없는 개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개헌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가 스스로 구성했던 6개 분과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제출한 자문보고서도 수용하지 않고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초안 소위를 11월에 구성할 것을 각 당 간사들 간에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헌법안을 만들었던 1987년 9차 헌법 개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간을 끌다 줄속으로 개헌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헌은 정치공학적 수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으로, 개헌의 주체와 동력도 당연히 국민이다. 개헌은 변화된 시대흐름을 단편적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촛불 민심을 담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 아울러 개헌은 내용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국민이 개헌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만 헌법이 국민의 것이 될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현재 진행하는 ‘토론회’나 ‘공청회’와 같은 요식적인 국민 참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없는 국민 참여 방식은 촛불의 정신과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 개헌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참여 방안 마련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나라의 기본 틀이다. 또한 헌법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개정이 가능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러므로 그 개정의 논의과정 역시 국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국민투표에서 찬반만을 표시하는 헌법 개정을 원치 않는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금이라도 헌법 개정과

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개방하고, 국민이 ‘진짜’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국회의 일방적 독주에 맞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지난 8월 29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약칭 : 국민개헌넷)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 국회 일방적 독주에 맞선 「국민개헌넷」 출범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개헌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 되도록 헌법의 의미와 헌법적 권리에 대한 토론과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다. 개헌은 국민 주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대두되는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모색돼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분권 자치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해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다. 개헌이 정치개혁을 회피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의 기득권 분점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선거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단순히 헌법의 일부를 정치적 협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국 사회와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결정하는 토론과 민주주의의 장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는 일방적인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참여형 개헌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선 자문위원회가 개헌 특위에 보고한 자문보고서를 국민들에게 당장 공개해야 한다. 국회 앞마당에 설치한 개헌발언대 수준이 아니라, 국회를 열어 주권자의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권(시민)광장

을 확대·설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국민참여방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개헌 특위에 국민참여방안을 재검토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개헌 논의 밀실 떠나 국민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국민개헌넷」은 개헌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들과 함께 헌법권리 찾기 민회와 주권자 모임을 시작해 헌법이 왜 중요한지, 개헌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유하고 함께 학습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헌법개정을 위한 주권광장을 열어 국회에서 논의될 헌법개정은 물론 정치개혁과 개혁입법 등의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도 헌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부문과 지역 그리고 전국적인 힘을 모아 다양한 규모로 새로운 헌법을 토론하는 공론장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국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돼 개정된 것은 없었다. 이제라도 개헌 논의가 밀실을 떠나 국민들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해야 한다. ☺☺☺

# 개헌, 늦더라도 바로하자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lkjkw@naver.com

최근 개헌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차례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견수렴을 내세우는 국민토론회에 국민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난 9월 12일 대전에서 5번째 전국순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임에도 개헌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는 달리 그 열기가 뜨거워 보였다. 토론회를 두어 시간 남겨둔 시간, 동성에 반대를 주장하는 특정 집단의 방송차량이 시내 곳곳을 누비며 개헌토론회 개최를 안내하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상충되는 잘못된 개헌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시청 앞마당은 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개헌반대 집회가 개최되고 있었고 노래공연과 특정 구호가 끊이질 않았고 또 한 쪽에서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다. 토론장인 대전 시청 대강당 또한 동성에 반대 단체들에 의해

이른 시간부터 행사장 좌석은 물론 강당 밖 로비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어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려거나 입장을 전달하려는 시민들은 그들로 인해 토론행사장 진입은 물론 자료집 하나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국민의 개헌에 대한 의견 전달은 특정 집단에 의해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했다.

헌법은 주권에 관한 최상위 법으로 주권자의 주권행사를 위한 도구이자 통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은 독재타도와 민주화,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발현된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1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어 현재까지 그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 열망에 의해 이루어진 개헌이었지만 개헌 과정에서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주권자인 국민이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개헌이었다. 개헌 후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내외적 여러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지구촌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권리 확대와 인권 의식 강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민의 촛불 혁명은 시민의 직접참정과 이의 헌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계기였다.

헌법은 이런 사회의 변화와 구성원의 욕구를 구현하는 최종의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의 이해와 요청을 반영하는 공론과정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관련된 논의는 국회의 개헌 특위와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근간을 이루고 있고 이전의 개헌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토론회는 지역 시민의 참여는 배제된 채 개헌 특위 위원의 기초발제에 이어 여야 4당이 추천한 8명의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을 거쳐 진정한 지역시민의 참여가 봉쇄되었고 그나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참가자 의견 발표도 특정 집단에 의해 봉쇄됨으로 국민 토론회에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몇 가지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헌 관련 내용들은 개헌 관련 매체나 언론 등을 통해 시민에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헌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국민 의견 수렴 공간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 이후 시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화했던 경험을 개헌과정에서도 유용한 기재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나 학계,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를 보면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하여 무리하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부치려 한다는 인상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렇기에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촛불혁명은 국민들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국민주권시대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들러리가 되고 결정된 내용에 찬반만 표시하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와 상반되는 것이기에 현재 진행 중인 개헌 과정은 국민이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의 모습인 것이다. 개헌과정에서의 실질적 국민 참여를 기대해 본다. 

#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ok@ccej.or.kr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9일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유예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대로 강행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법안 발의는 김진표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까지 참여했다. 법안발의에 참여한 25명의 의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법안발의 참여한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더불어민주당(5)</b>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송기현, 이개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유한국당(15)</b>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현승, 장제원, 홍문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의당(4)</b>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바른정당(1)</b> 이혜훈</li> </ul>

## 법안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 민원 수용에 불과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 항목으로 분류되어 과세를 앞두고 있었지만, 2년이 유예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 조세형평성 차원과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또 다시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4개 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한 것이다. 이는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수용해 조세정의를 흔들려는 것에 불과하다.

## 수년 동안 과세준비를 하지 않고 무엇을 했나?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지는 측의 주장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부족' 이라고 한다. 종교인 과세는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 되었던 이슈이다.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준비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부총리까지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까지 하여,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또 다시 2년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폐기토록 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세 전환으로 가야**

내년 시행될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저소득 종교인의 경우 4대 보험 안전망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변수가 상당히 존재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보호해야만 한다. 근로소득세로 과세가 되면, 소득에 대한 증빙이 가능해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의 장점도 있다.

기타소득 과세의 또 다른 문제는 세금을 내게 될 소수 종교인의 경우, 일반 고소득자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세무당국은 과세 대상 종교인을 4만6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과세를 할 경우 세수는 100억원 대로 추산 한다. 기타 소득으로 둘 경우, 세수확보의 효과 또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로 전환한다면, 100억원대 보다 훨씬 높은 세수를 가져올 수 있다.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야**

이번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발의에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었다.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일부 3명의 의원은 철회하고, 5명의 여당 의원이 남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서 언급 했듯이 의지가 높지는 않아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무엇보다 조세형평성과 정의,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는 최근 법인세, 소득세 등 증세 논쟁에서의 당정의 배치된 주장,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당의 다른 입장 등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다. 조세가 가진 정책적 기능과 목적을 보면, 답은 분명함에도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나아가 청와대는 조세정의를 위해 힘을 모으고 동시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응은 북핵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조성훈 통일협회 간사  
reunification@ccej.or.kr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정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사드 임시 배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영상 공개, 탄두 중량 확대,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제재 등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독자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의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 강경책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대북정책은 제재·압박 일변의 정책이었다. 비핵·개방 300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 대박 등 구호만 난무하는 대북정책뿐이었다. 때문에 최악의 남북관계 시기를 보냈다. 또한 5.24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그나마 남북관계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끈들을 끊고 말았다. 대화·교류가 아닌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는 남북관계가 바로 설 수 없음을 9년간 잘 보여주었다.

베를린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 하겠다’, ‘대화

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베를린 선언의 기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라는 기초에 짓밟히고 말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이 제재·압박을 통한 해결에 밀리고 만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은 일시적으로 북한에 고통은 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물불 안 가리고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게는 제재·압박이 오히려 추가적인 도발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따름이다. 더불어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약화시키며, 주변국의 연쇄적인 핵무장을 촉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정적 상황 관리식 대응이 아닌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 국내 권력 기반 강화, 북한 정세에 대한 외부세력의 물리적 개입 차단 등이 이유 가될 것이다. 그 중 가장 핵심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이다. 때문에 체제 보장을 목적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갈팡질팡 대북정책은 북핵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치밀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만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일관된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재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우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이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국제사회에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을 해야 하며, 중국에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민 여론 조성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지지가 더해질 때야 평화적 대북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압박에 휘둘리고 있다. ‘운전대를 잡아보지도 못하고 보조석에 앉았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보수 쪽에서는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진보 쪽에서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 없는 대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계속해서 북한에 강경 대응에 나설지 아니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설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우리가 주도하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책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 지난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가야만 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 2017 세법개정안, 기대와 우려

오세형 경제정책팀 간사  
dipsec@ccej.or.kr



▲ 지난 8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촛불 시민혁명의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세법개정안을 지난 8월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원 마련과 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경실련은 2017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에서 세법개정안을 평가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축소”라는 프레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정부의 세수효과 추계를 살펴보면 충분한 재정조달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렇



▲ 박훈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이 발제를 진행했다.

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증세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재정지출 금액과 증가 속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때보다는 세입확충 방안이 나아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는 우려를 표하며 합법적인 부의 세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조세형평성에 대해서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를 그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변동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자와 투기자 간에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차이를 내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이 핀셋증세를 하려는 이유가 증세 순서상 조세정의에 적합하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증세여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여론조사로 가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조세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좀 더 적극적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기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해서 도입 취지와 달리 지금은 매출액 3,000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막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방위세의 도입과 법인세의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증세 없는 세법개정안을 얘기하다가 비판이 일자, 다급하게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이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불합리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역시 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투기방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세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개혁의 방점이 복지와 삶의 질 문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22%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증세논의에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중부담-중복지'의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또한 조세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구간 정비, 금융소득·임대소득의 과세 강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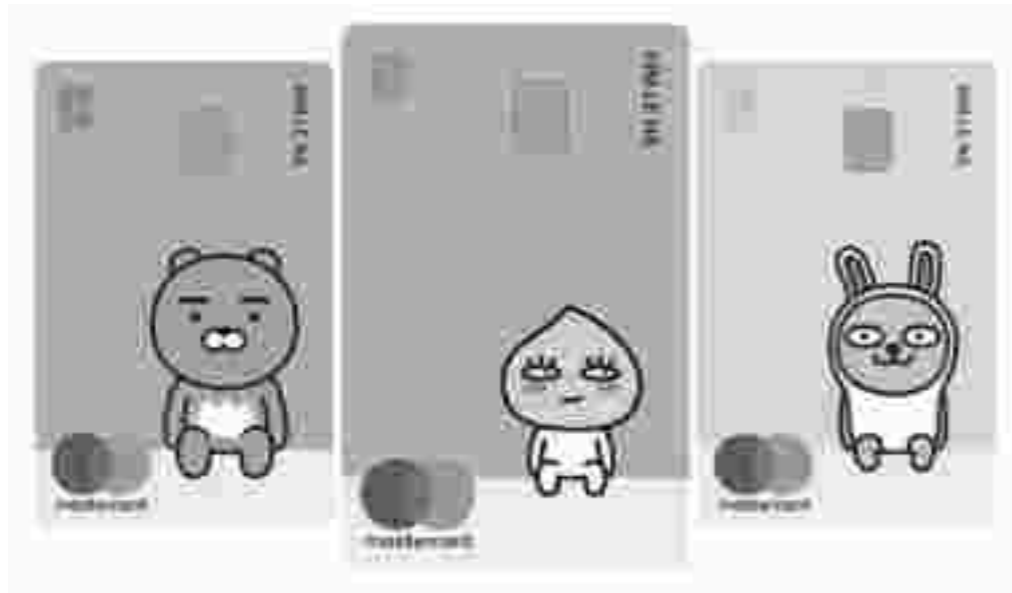


▲ 2017년 세법개정안 취지 요약



# 특혜 위에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 국민은 불안하다

최예지 경제정책팀 간사  
cyj@ccej.or.kr



▲ 출처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화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캐릭터를 활용한 체크카드 발급으로 계좌개설이 300만 건을 넘어섰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손쉬운 계좌개설과 대출 등이 편리하다고 서로 후기를 나누고 있다. 은행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도 시중은행에 경쟁을 유도했다는 면을 부각하며 긍정적

인 면만 이야기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쉬운 대출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정책과 상충문제,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이었던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은 외면하고 안정적인 상품인 직장인 대출에만 집중하는 문제, 결정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만의 특혜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은행과 다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명백한 은행(銀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지점’ 조건으로 인가되었다. 따라서 은행지점이 없어 비용 절감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도 지점을 설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위 담당자도 확인해야 할 만큼 불명확하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은행 서비스는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기업이 은행을 차렸다는 점 이외에는 시중은행과 차별점을 찾기 쉽지 않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은 형태와 서비스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 시중은행과 업무는 같고, 규제는 다르게 적용하는 특혜

은행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특정한 시기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는 시스템이다. 만약 대출 등 자금의 운용이 잘못되어 은행이 파산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은행이 부실화되거나 파산하면 경제에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산업이다. 은행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같은 업무를 하는데, 규제는 다르게 적용받고 있다. 현행 은행 자본 건전성의

기준은 BaselⅢ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이 규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뼈아픈 고통의 결과로 금융기관의 단기부채에 기반을 두고 자산을 운용하던 고위험 영업 행태를 규제하고자 자기자본의 질적 강화와 유동성 규제 비율을 도입한 것이다. 세계적 추세는 권고 규제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된 Basel I 기준을 일정 기간 적용하는 특례를 주고 있다. 2019년까지만 이라고 한정 지었지만, 어느 곳에도 명문화되지 않아서 강제성이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Basel I 기준 적용의 문제는 세계 금융위기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든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위험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은행에 소규모라는 이유로 과도한 자본 건전성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여 금융위기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저가항공사라고 안전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썸이다. 또한, 규제 예외적용 문제는 금융 산업정책이 금융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또 다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쟁점, 즉 은산 분리 완화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 특별법까지 발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지분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고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는 등 경제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동등한 영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저축은행사태 등의 금융사고를 경험했다시피 은산분리는 단순 은행 소유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엔 원칙으로 꼭 지켜야 한다.

**케이뱅크는 시작부터가 특혜**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은행 주식의 4%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별표 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

치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당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인가 당시 분기 말(15.6월 말) BIS비율은 14%로 업종 평균치인 14.09%에 미치지 못했다. 이 규정은 배점의 대상이 아닌, 기준이므로 기준에 미달 시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에서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 말 자기자본비율이 아닌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로 적용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제출하였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여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 BIS 비율은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치 14.13% 이상이므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 해석하여 케이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2016년 4월 해당 규정인

「은행법 시행령」(별표 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삭제하였고, 이후 케이뱅크는 본인가를 거쳐 영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불법적 인가과정에 대해서 금융위는 내부 감사를 해야 하고, 인가취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도 내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 중이다.

**전문가들도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지적**

경실련과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의 토론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과정에서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자본 확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전문가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사전적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리는 시장 사업자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여 또다시 금융대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조혜경 박사는 새로운 유형의 은행을 설립하는 일이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 원칙을 '포기'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확충의 어려움을 빌미로 은산분리 특례입법을 압박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신규은행임에도 편의성이나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자금조달방안이나 대주주 적격성 및 주주구성 등의 부분들은 다소 소홀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서는 특혜 울타리를 치워야**

24년 만의 은행의 등장으로 은행업계가 긴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등장시킨 은행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금융위가 애초에 밝힌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목적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생력 있는 혁신적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핑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도움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시중 다른 은행과 같은 규제안에서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 특히, 은행의 안전규제라고 할 수 있는 자본건전성 규제는 예외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요건이다. 초기라는 이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예외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는 특혜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국민은 특혜로 과대 포장된 은행 말고, 제대로 된 은행을 갖고 싶다.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다. ☺☺☺

전문가

2017년 9. 10월호

# 소비자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집단소송제.

-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권태환 시민권익센터 간사  
dopj@ccej.or.kr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 여파로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과거 가슴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태와 같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책임회피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머물렀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반복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 소비자주권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가슴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 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사건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진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 전 피해구제 단계에서 큰 좌절

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직접 하기가 어려우며,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실제 손해액만 보상 받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피해보상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재의 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아직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행위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부재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부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즉,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있는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 후 첫 승소까지 12년이 걸린 것은 소송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소송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도입과 입증책임 전환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 타워 강화 필요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소비자보다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를 위한 처우도 부실했다. 세월호, 가슴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등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정부의 부실한 정책집행이 일조했다.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요 섭취 식품 및 생필품이기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어 있지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무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지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제2의 가슴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소비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먹거리와 생필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줄 수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때문에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인 독립적 소비자 행정기구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절실하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정부는 국회와 함께 하루속히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도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이제는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



#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박지호 사회정책팀 간사  
jhpark@ccej.or.kr

“잘 안 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답변이 화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란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총리의 답변에 시민들이 환호할 만큼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비정상이다.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토대 위에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을 지나며 공영방송은 말 그대로 몰락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던 세월호 참사,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할 때 공영방송의 보도는 편향됐다. 현장의 기자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보도지침들이 내려졌고 정권의 실세는 공영방송 보도본부장에게 극적으로 도와달라 전화를 했다.

저항하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부당전보와 출연금지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MBC는 기자

들의 성향·회사 충성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활용하기까지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을까? 결국 KBS와 MBC 구성원들은 지난 9월 4일 0시를 기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김장겸, 고대영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동시 총파업을 시작했다.

2016년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KBS와 MBC는 가장 불신하는 언론 2, 3위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KBS와 MBC 사장 사퇴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총파업에 찬성한다. 몇 개의 기초적인 설문조사만 찾아봐도 더 이상 시민들에게 ‘국민의 방송’ KBS와 ‘만나면 좋은 친구’ MBC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시작은 그간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등을 포함한 경영진의 자진사퇴다. 구성원들 역시 책임이 있다. 최근 공영방송 정상화를 바라는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님(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진도체육관에서 팽목항에서 나를 두 번 죽인 건 여러분의 사장이 아니고 현장에 있던 바로 여러분들이었다”고 했다. KBS, MBC 파업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연설에서 쏟아낸 유경근님의 눈물들은 정상화된 공영방송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줬다. 그들은 편향성을 벗고 독립성을 입은 주체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 지난 9월 6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많은 시민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갖고 있다. 이번 파업은 KBS, MBC 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KBS, MBC 구성원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더 큰 지지와 격려를 보내야 한다. 관련 소식은 페이스북 페이지 돌마고(@change.kbsmbc)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를 공정하게 재편해야 한다. 여야 추천 인사의 비율을 맞추고 어느 한 쪽이라도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등을 즉각 개정하여 언론

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떠한 정권도 언론을 장악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경실련과 시민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KBS, MBC 구성원들의 언론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강력한 연대의 뜻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공정한 언론을 우리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함께 외쳐보고 싶다.

“김!장!겸!은! 물!러!내!라!”

“고!대!영!은! 물!러!내!라!”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필진 소개

2017년 9. 10월호

# 지방정부 공무원 공로연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ccejdg@hanmail.net

지난 여름, 대구경실련은 4개의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로부터 '성명서의 즉시 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받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공로연수를 거부한 여성사무관에 대한 대구시의 조직적인 공로연수 강요와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대구시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사과를 요구한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의 공동성명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성명'이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성명'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두 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살벌한 말도 들었다. 하지만 대구경실련과 대구여성회는 성명을 철회하지 않았고, 대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두 단체가 책임을 질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새공무원노동조합,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지부 등 대구시청 4개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모두 연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대구시청과 공무원들에게 이 여성사무관의 공로연수 거부는 의외의 일로 어느 정도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이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전제

로 결정한 승진 등의 인사가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전 같으면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공로연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지난해 지침이 변경되어 공로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거부한 그 사무관이 소속된 사무관의 팀장인 팀에 승진내정자를 포함한 3명의 사무관이 동시에 근무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대구지역 언론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연대가 '충돌양상'을 보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출근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1993년에 도입되었다. 공로연수의 제도적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으로 지방정부 장의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 인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원칙일 뿐 대부분 정년퇴직일 전 6개월~1년인 공무원이 공로연수

대상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차별이 있어 대구시의 경우 5급이상 공무원은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는 반면에 6급공무원은 정년퇴직예정일로부터 6개월 정도 남은 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공로연수기간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민간연수기간에서 받는 교육훈련비도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공로연수를 한 지방공무원은 2015년 2,867명, 2016년 3,175명, 2017년 4,000명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년 평균 1,5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로연수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놀고 먹는 제도'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공로연수 계획 수립 전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연수대상자가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 노후생활설계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공로연수 일정에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6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사회 재취업준비를 위한 연수시간 반영'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로연수 공무원은 집에서 쉬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른다는 이유로 도입된 공로연수제도가 장기간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런데 장기간의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그 기간

과 보수가 지나칠 정도로 과하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이전에 떠밀리듯 조기에 강제 퇴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것은 떼뻗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공로연수 지정에 불복하여 지방정부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 공로연수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관행이 된 일반적인 공로연수자 선정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의 공로연수 거부는 특수한 사례인 것이다.

공무원 공로연수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인사철마다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이다. 구미경실련이 2012년, 구미시청에 공로연수 제도 폐지를 요구했을 정도로 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충남 당진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폐지할 정도로 공로연수 폐지는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행정안전부와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공로연수 폐지에 소극적이다.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퇴직 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로 '장기재직 공무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단히 민감하다. 이는 공로연수 대상자 대부분이 공로연수를 받아들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도에 비판적인 공무원들도 공로연수 거부자들에게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역설적이지만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도 공로연수제도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정부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런데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평가는 황당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놀고 먹는 제도’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도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제도가 원활한 인사운영-인사적체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되어 결원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다른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과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다. 공로연수 대상자가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승진이 1년 쯤 늦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로연수에

정년퇴직을 1년 쯤 앞둔 간부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리 없으니 차라리 공로연수를 보내서 연쇄적인 승진과 신규 채용으로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무능한 인사를 조기에 업무에서 배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실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한 지방정부의 경우 이로 인한 득보다는 복지부동,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평가도 없지 않은 모양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로연수의 제도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 근무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1항,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는 파견근무에 관한 것으로 공로연수라는 단어는 없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은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로연수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공로연수는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규의 개정만으로도 폐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시각, 공로연수는 지방정부 장의 재량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인사적체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는 공직사회 자체의 문제로 인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이라는 관점으로 판단해도 공로연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공로연수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최소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했어도 공로연수제도가 ‘먹고 노는 제도’라는 악명을 얻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수의 시민이 동의할만한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고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공로연수는 폐지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공로연수제도 개선운동을 벌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공로연수제도는 ‘놀고 먹는 제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상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지방정부 장의 재량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공개만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2014년~2017년의 공무원 공로연수계획서와 공로연수 공무원 수 등 공로연수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공개하였는데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대구시의 공로연수 계획과 공로연수자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개했다면 더 큰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대구경실련의 공로연수제도 관련 활동은 대구 여성회와 함께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공로연수 강요, 인권침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장에게 문책과 사과를 요구하는 문서를 보낸 것, 대구시의 공로연수계획서와 공로연수 개요를 공개한 것, 대구교육청과 대구지역 구·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전부이다. 아직 폐지, 개선 등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지방정부 공무원 공로연수 개선운동’을 느긋하게 진행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급하게 나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

# 해경 부활, 인천 환원!

- 인천시민이 이룬 소중한 승리!

김성아  
인천경실련 정책부장  
4232950@hanmail.net

해체됐던 해양경찰이 부활했다. 지난 3년의 궤적은 험난했지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승리다. 인천시민들은 보수·진보, 남녀노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민안녕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한마음으로 뭉쳤다. 여야민정을 일군 것이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강력히 저항했다.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 2015년 9월 추석 명절을 코앞에 두고 정부는 느닷없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연휴 맞이에 들뜬 인천 시민들은 당황했고, 서해 5도 주민들은 분노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문제는 국민 안전은 물론 우리 해양영토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앞바다는 접경지역 중에서도 교전지역이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스스로 국민안전과 해양주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생명권과 생존권을 걸고 국토방위의 현장을 지켜온 서해5도 주민들에겐 나라가 백성을 버린 꼴이다. 인천지역 여야 민정이 나선 이유다.

## # 해양경찰의 해체에서 부활까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전격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시켰다. 이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입주해 있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행했다. 해양경찰 해체 전만하더라도 지방이전 제외 대상기관이었지만 경찰 지위가 박탈되면서 이전 명분을 획득한 것이다. 헌법에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등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의 기관은 이전 제외 대상기관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사건의 정치적 치부와 책임을 가리고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균형발전론으로 현혹한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요구했고, 급기야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이라며 정부 방침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요로에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한편 세종시 이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방어했다. 하지만 정부는 편법적 예비비 편성을 통해 세종시 이전을 강행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상황

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지난 2016년 10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야 정치권이 함께 분노했고, 국민여론이 격앙됐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정세에 맞춰 ‘해양경찰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 운동’으로 전환하고 국민 여론 형성에 나섰다. 인천시민과 국민들은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정국을 맞이했고, 5·9 장미대선이 치러졌다. 3년 만에 세월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안전’이 대통령선거의 이슈로 급부상했고 대통령 후보들은 앞 다퉈 ‘해양경찰 부활’을 공약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인천에 직접 방문해 ‘해경부활 및 인천환원’을 약속했다. ‘인천 3대 비전, 10대 공약’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 #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으로의 환원이 남긴 교훈

국민은 정쟁의 피해자로 남아선 안 된다. 서해 5도가 있는 인천 앞바다는 남북 간 북방한계선(NLL)과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수도 서울을 방어해야 할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보니 국민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라는 사명을 띠게 됐다. 하지만 그 현장을 지키는 시민도 똑같은 국민일 텐데 ‘해양경찰 해체와 이전’이라는 극단적 정책을 펴고 말았다. 이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의 책임이다. 세월호참사의 정치적 공방이 한창 일 때 소신 있게 해양경찰을 지켰던 정치세력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한편 인천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워낙 다양한 지역의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 선거의 ‘바로미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지역 색도, 정치적 쏠림도 없다 보니 한 뜻으로 뭉치기가 쉽지 않은 동네다. 그래서 정부의 해양경찰 해체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에 어느 누구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전한 정부기관이 되돌아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은 비껴갔다. 인천시민은 무섭게 결집했고 드디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배제한 채 오직 국민 안전과 국가안위만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전개해 온 인천시민의 성과다. ☺☺



▲ 인천경실련은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해 토론회 및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했다.

지역이야기

2017년 9월 10일

# [현장스케치] 제14기 4차 중앙위원회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i78@ccej.or.kr

###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우리가 모인 이유죠!



▲ 지난 8월 18일과 19일, KT&G 경주수련관에서 전국 경실련이 모여 제14기 4차 중앙위원회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은 서울 대학로에 있는 중앙경실련 외에도 전국에 모두 28개의 지역경실련이 있습니다. 각자 터한 지역 현장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을 펼치다가 일 년에 두 번 2월과 8월에는 전국경실련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가족들이 설과 추석에 한 번씩 모여

안부를 묻고 그간의 일들을 나누듯이 경실련의 명절 같은 날이지요. 바로 중앙위원회입니다.

제14기 4차 중앙위원회가 지난 8월 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수학여행지로 더 유명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경주



▲ '지방정부 공무원 공로연수 개선운동' 분임토의

라 그런지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각 지역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 부지런히 달려온 덕분에 오후 3시부터 공식 행사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정책협의회의 회입니다. 소순창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중앙과 각 지역의 2017년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전국 경실련은 시민을 위해 어떤 활동으로 분주했을까요?

올해 상반기는 중앙경실련 뿐 아니라 각 지역경실련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탄핵, 그로 인해 조기로 치러진 19대 대선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앙경실련은 전경련 해체운동, 최저임금 생활화, 등지내몰림 방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 팀별 핵심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민선 6기 시장공약 평가 및 시의회 감시활동, 지역현안 대응 연대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했습니다. 지역경실련은 회원사업들이 활발한 게 장점이자 특징인데, 올 상반기도 생태, 책모임, 취미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회원과의 만남을 풍성히 가졌습니다.

전국경실련 공동사업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도시재생사업, 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대응, 프랜차이즈 문제의 실태와 운동방향, 지방정부 공무원 공로연수 개선운동 등 다섯 가지 사업이 제안됐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의 사업소개 이후 다섯 모둠으로 흩어져 분임토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모둠 모두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 경실련 '우리의 다짐' 낭독하는 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와 중앙경실련 이성운 간사

저녁식사 후에 권영준 의장의 사회로 제14기 4차 중앙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부의 안건은 상반기 사업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과 국가 에너지 정책 관련 전국경실련 성명 채택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건설여부 공론화등 탈원자력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에는 동의하되 보다 정교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두 안건 모두 심의했습니다. 그밖에 지역경실련 협의회 운영규칙 개정과 전국경실련상근활동가 교육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경실련 우리의 다짐을 낭독하고 중앙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각 지역에서 정성껏 챙겨 오신 특산물로 팔도 음식나누기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지내온 이야기들 나누며 경주의 밤은 깊어갑니다. 다음 날에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다녀왔습니다.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올라가는 길이 생각보다 힘든 등산길이라 절기상 입추를 지났지만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산길을 함께 오르며 귀여운 다람쥐도 만나고 문화유산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와 열을 느끼며 우리의 몸도 정신도 일깨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국사 공양밥을 맛있게 먹고 다음 중앙위원회 때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자의 지역으로 헤어졌습니다. ☺☺

## [인터뷰] 20대 회원 인터뷰 - 황호식 회원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ji78@ccej.or.kr

회원팀에서 회원들 인터뷰를 하고 월간경실련에 실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을 인터뷰할 수는 없지만 회원들과 더 긴밀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10대 회원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연령층 순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 호에는 20대 회원 분을 만났습니다. 10대 회원수보다는 조금 많지만 경실련

회원층 가운데 10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적은 회원 연령층이 20대입니다.

20대 회원을 늘려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어떻게 돌파해갈지 고민하며 인턴활동을 계기로 2014년부터 경실련과 인연을 맺어 오고 있는 **황호식 회원**을 만나러 경기도 양주에 다녀왔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나이인 20대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황호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며 지내고 있어요.

싶었어요.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돈을 할 수는 없지만, 적은 돈이나마 꾸준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적은 돈으로 하는 대신에 오래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경실련 회원이 되신 계기는?

A. 경실련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3년 전에 인턴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때 회원홍보팀에서 일했었는데, 일하면서 느낀 점은 경실련이 복지단체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일하는 분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이 부족하다

Q. 현재 중2학생들이 새로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수능개편안을 비롯해 현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가난한 아이들이 올라설 기회가 갈수록 더 줄어드는 거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3년간



인턴활동을 계기로 회원이 된 황호식 회원

내신을 못했어도 수능을 잘 보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수능도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난한 아이들이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능이라고 봅니다. 내신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다고 봐요. 가난한 아이가 3년 내내 1등급 받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갈수록 정시보다 수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신과 자기소개서 등이 중요해지는데, 사실 한국에서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것들을 뭘 그렇게 많이 이루었겠어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은 집안의 지원이 있는 아이들에게나 가능하죠. 어떤 경우든 가난한 아이들이 일발역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능개편안은 그런 수능에 대한 비중을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염려가 돼요.

저도 수능개편으로 피해를 본 세대예요. 2008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수능등급제로 바뀐 세대거든요. 1학년 때는 내신만 반영하겠다고 해서 내신만 열심히 했는데, 2학년 때

는 논술을 많이 보겠다 해서 논술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3학년 때 수능이 확 등급제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약간 피를 봤죠. 지금 중2 학생들 보면 애네도 고생을 하겠구나.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Q.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 어른만큼 처벌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법리체계상 어렵다고 해요. 중학생들은 선거권 같은 기본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른만큼 처벌하려면 기본권을 제공해야 하는데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촉법소년<sup>1)</sup> 연령은 조금 낮춰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는 처분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벌을 세워도 안 되고 아이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학년 고학년 따지지 않고 정말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교사가 어떤 처벌이나 훈육을 가할 수 없어요.

학생이 교사한테 실내화를 집어던지고, 책상을 집어던져도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여는건데, 그건 들이는 노력에 비해 하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경찰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면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고도 교사냐? 아이들을 성직자처럼 대해야지'라는 암묵적 요구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성직자처럼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는 수준까지 가려면 적어도 교사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교권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중학교 폭행 사건 일어날 동안 선생님들은 뭐했냐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세요.

현장에 나오시면 더 한 것들 많이 보실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부산 여중생 사건이 전혀 특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중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요. 하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Q. 경실련 인턴 출신 회원이신데, 인턴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여러 가지 일이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 저는 경실련 인턴을 시작할 때부터 조금 다른 인턴들과 달랐어요. 다른 인턴들은 학교에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하고 오는데, 저희

1.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학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민단체에 대해 알고 싶었고, 잘 알려면 웬지 큰 단체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보고 대학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름방학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무작정 사무실에 가서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한거죠. 경실련 사정상 유급으로 일하긴 어렵다는 걸 대충 알고 있어서 무급으로 일할테니 시켜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 때 당시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의혹과 학술연구비 부당수령 등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검찰청 앞에서 했는데, 제가 교대생이라고 저보고 발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이 찍히고 기사가 나갔는데, 저희 학교 총장님이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국립대니까 교육부장관에게 찍히면 좋지 않겠지요. 물론 총장님 입장은 이해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의견의 다름에 대해 국립대도 많이 흔들리는구나 하는 조금 씩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턴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 교대를 진학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거 같아 휴학하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시민단체 일이 저한테 잘 맞는 거 같아 상근자로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요. 다시 복학하고 학교 마치고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맞는 거 같아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가 됐어요.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Q. 20대 회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경실련에 20대 회원을 늘릴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저도 인턴할 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그때부터 큰 고민이었어요. 그 때 이야기 나왔던 게 20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SNS를 해보고 이런 저런 홍보도 많이 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지만 SNS로 이름을 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거 같아요. 그 대신 더 많은 ‘좋아요’와 호응을 얻기 위해 조금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겠죠.

그런 것보다 경실련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고 그걸 잘 알리는 거죠. 정말 큰 건을 잡아서 터트리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큰 건이 터졌을 때 이 건을 앞장서서 탐사팀처럼 파거나 아니면 하나를 잡아서 끝까지 묻고 늘어지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티를 안 냈다면 앞으로는 티를 많이 내면 좋겠어요. 경실련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음지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사람들은 사회가 바뀌었네 하지만 이게 누구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건 모르고 지나가요. VOIP 같은 것도 망중립성 관련해서



지난 9월 11일, 황호식 회원의 학교가 있는 경기도 양주 근처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실련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씩 좋아지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이랬을 때 경실련이 이런 노력을 해서 그런거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정한 언론들과 협력관계를 잘 맺으면 좋겠어요.

**Q. 끝으로 현 교직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제자(학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제가 좋아하는 말이 체 게바라가 한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항상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라는 말이에요. 초등학생들보다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말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현실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많은 경험이라고 봐요.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정말 다양한 길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선택해 깊게 가져가는 건 아이의 역할이

지만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교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보다는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현직교사인 저한테 아이들을 맡기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이 사회가 정말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많이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넓은 눈을 열어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사로 일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 인권 신장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많이 떨어지는 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욕물 버리다 그 안의 아기까지 버린다는 속담처럼 잘못된 것을 바꾸려다 참된 배움과 깊은 사제관계라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학창시절 직업인의 자세로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을 볼 때 아쉬운 마음이 많았는데, 아직 교사로 보낸 기간은 짧지만 자기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황호식 회원을 보니 소신있는 훌륭한 교사가 되리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학교일이 너무 바빠 경실련 활동들 꼼꼼히 잘 보지 못한다고 미안해했는데, 자기 자리에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턴 활동이 학교에 제출하기 위한 형식



좋은 교사로 학교라는 장에서 경실련 운동을 뜻 깊게 펼쳐가길 응원합니다.

적인 활동으로 전략한 경우도 많은데, 스스로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직접 찾아와 일하고 싶다고 한 황호식 회원처럼 우리 사회 20대들이 폐기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길 응원합니다. ☺☺

### [인터뷰] 별때추니 정혜진 작가 인터뷰

정리 : 윤은주 회원팀 간사  
dongji78@ccej.or.kr

월간경실련의 오아시스 같은 코너! '별때추니'의 정혜진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혜진 작가님은 2013년 3~4월호(통권 133호)부터 재능기부를 통해 좋은 그림과 글로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울림을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실련 회관까지 직접 발걸음 해주셔서 반갑게 작가님과 만났습니다.



지난 9월 6일 경실련 1층 카페에서 정혜진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2013년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경실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전 직장에서 일로 알고 지내던 분이 경실련 상근자로 오시게 됐어요. 그 분이 제가 평소 낙서처럼 그림 그려서 카톡에 올리던 걸 보시고, 경실련 잡지에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죠. 공식적으로 제 그림을 어딘가에 실는다는 게 처음이어서 영광이었

어요. '직업으로 하는 정식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닌데...'라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처음에 경실련 잡지라고 해서 왠지 시사만평 같은 걸 해야하는 줄 알고 부담스러웠는데, 당시에 월간경실련 담당하던 간사님이 안 그래도 잡지 자체가 무거운 내용이 많으니까 편하게 재미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훨씬 마음이 가벼워졌었어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인터뷰 내내 좋은 친구와 만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제안해주셨던 간사님이 경실련을 그만두셔서 제 코너도 탈락되겠거니 했는데, 계속 지면을 주셔서 감사했지요. 2년 넘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4년을 넘겼다니! 두 달에 한 번이어서 할 수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Q. '빨때추니' 제목의 뜻이 무엇인가요?**

**A.** '제멋대로 짤짤거리며 요리조리 싸다니는 여자아이'란 뜻의 순우리말이에요. 소설에선

가 보고, 마음에 들어 아이디어로 쓰곤 했었어요. 20대 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빨때추니 같은 계집아이가 되고 싶었던 거죠. 아는 사람 많지 않은 우리말이라 더 애착이 가기도 했고요. 첫 그림을 보내고 제목은 뭐로 하면 좋을지 물어오셔서 급하게 이 제목으로 짓게 되었어요.

**Q. 어떻게 그림으로 시사적인 이야기나 삶의 이야기를 그려내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 어릴 때부터 역사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역사공부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위안부 문제처럼 관심 가지는 주제들은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기도 하고 대학 시절 피가 뜨거울 때는 다큐멘터리들도 찾아보고, 한참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등록금 투쟁이나 주로 학교 행사와 축제 진행 등의 활동이었지만 학생회 활동도 했었어요. 빨때추니 덕분에 경실련에서 다루시는 자료들 접하면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까지 20대 때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느낌을 끈으로 붙잡고 있는 루트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종이에 아무 생각없이 이것저것 그려보다가 여기다 이런 글을 붙이거나 여기다 어떤 사람을 덧붙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그려야지 하고 그리는 것들도 있지만 우연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그럴 때 나오더라고요.

**Q. 경실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A.** 전통있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SNS도 활성화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과 더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직장에 들어오기 전 미술관련 계통에서 계약직으로 2년 일했던 경험이 있어요. 당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하는 법 때문에 2년 지나면 무조건 자르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법과 정책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걸 느꼈어요. 제도만으로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구멍이 많다는 걸 느끼며 언론이나 시민단체 활동이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제도가 바뀌는 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면서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Q. 지금까지 총 25편을 그려주셨는데, 직접 베스트 3를 뽑아주세요.**

**A.** 네 질문을 받자마자 딱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어요.

먼저, 제일 첫 작품이었던 '지나가다 문득'을 뽑고 싶어요.

두 번째는 세월호 사건 이후 그렸던 '기억'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저도 되게 감사했던 게 이전까지는 흑백작업을 했어요. 제가 '포토샵'도 잘 못하고 그래서 흑백으로 보내드리고 흑백으로 실어주셨어요. 그런데, 세월호 때는 노란색을 강조하며 그렸더니 경실련 잡지가 다 흑백인데 표지 뒷면에 실어 주셔서 컬러로 볼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원래 표지 앞뒤는 광고자리라 컬러로 나오는 귀한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배려해주셨구나, 귀한 자리 내주셨구나 감동이 됐었어요.

마지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그린 그림이에요. 2차인지 3차인지 대국민 담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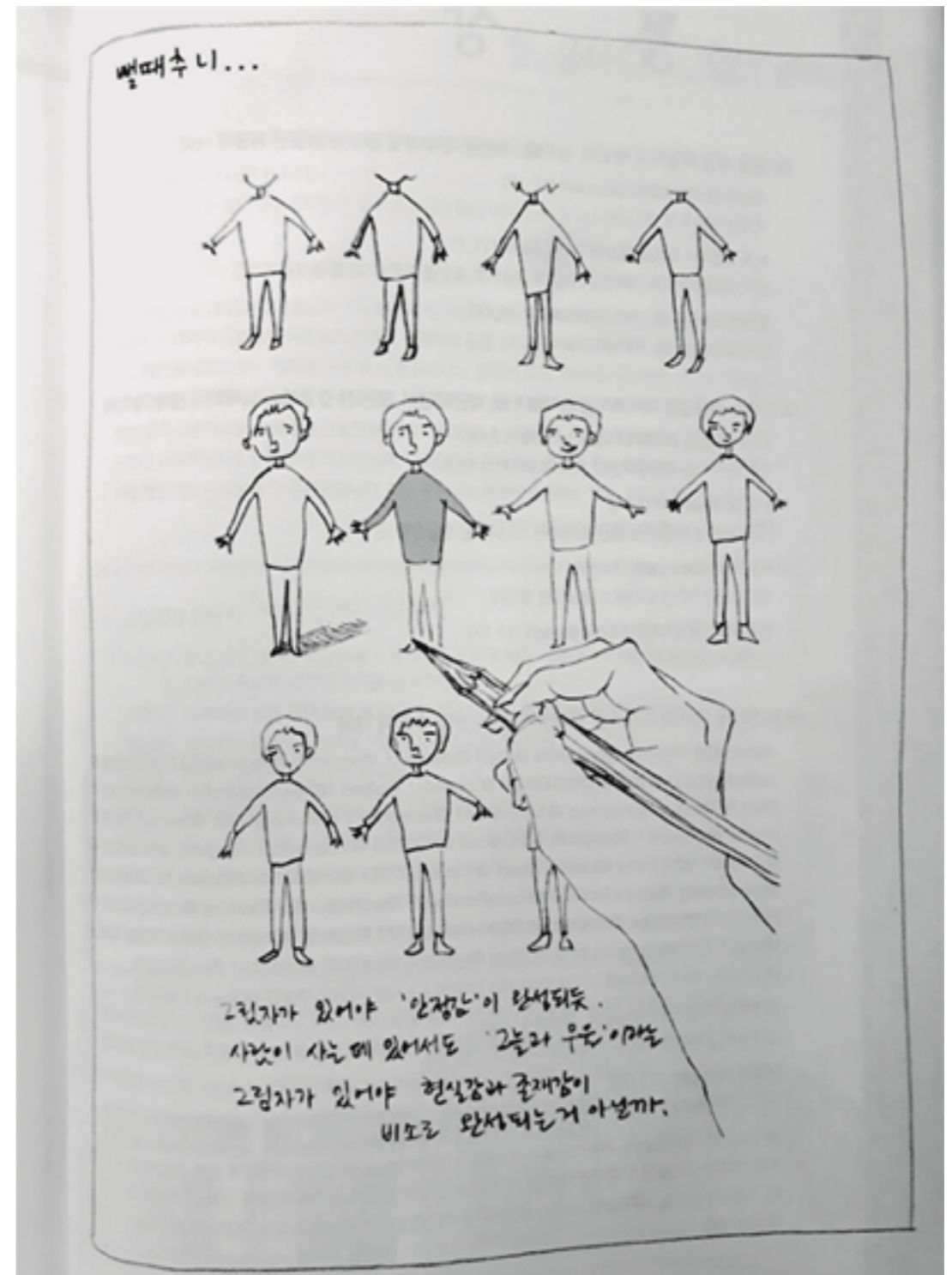
기자회견 하고 돌아서는 박 대통령 뒷모습을 보며 그림으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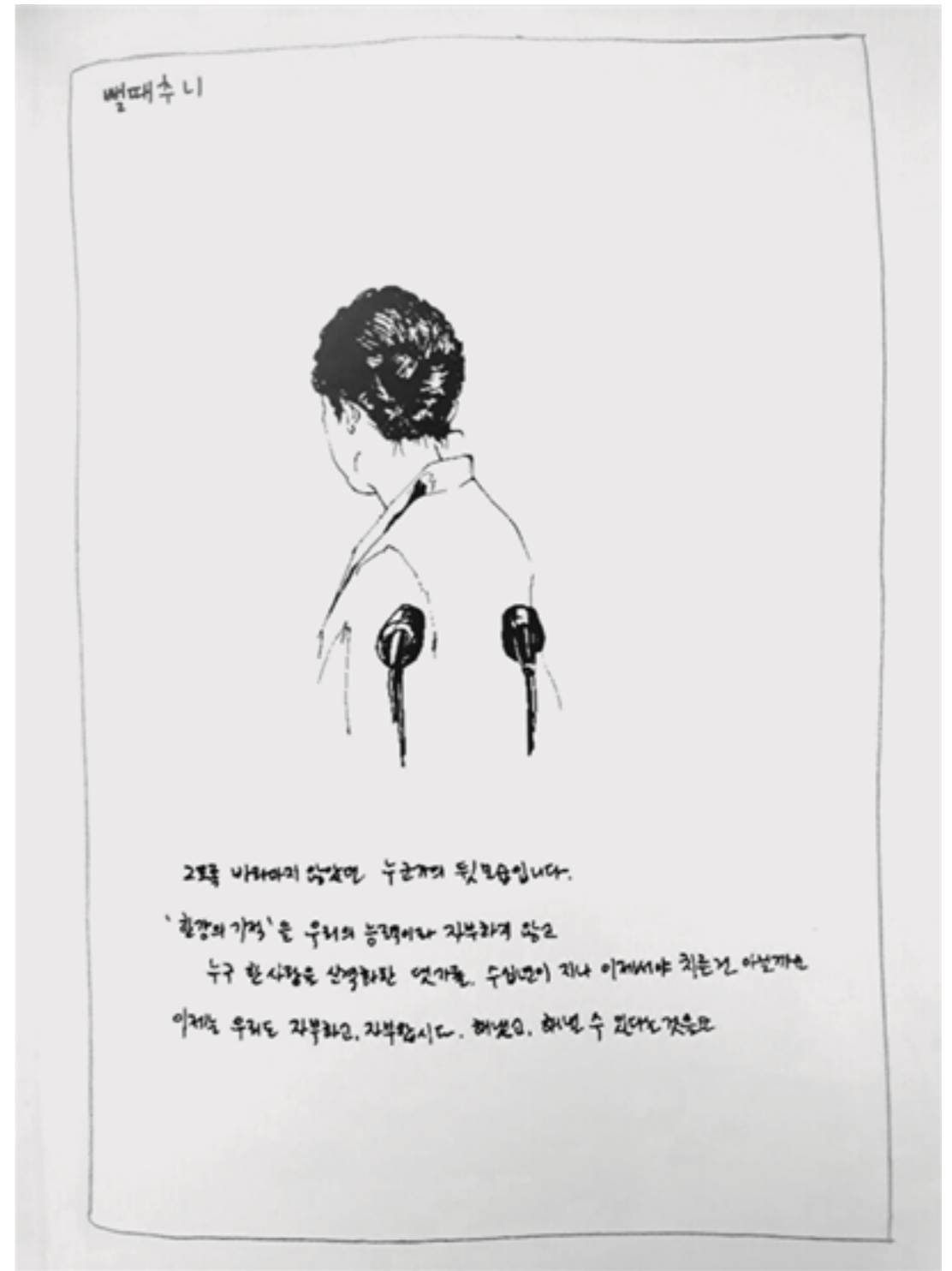
지금쯤이면 이런 그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마음이랑 상황이랑 경실련에서 배려 해주신 것들이 잘 맞아떨어졌던 3편이었던 거 같아요.

빨때추니 작품들을 보면 내 모습을 들킨 거 같아 따끔하게 찢리기도 하고, 너무 공감이 돼 나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거나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1등만 주목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가치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작품을 통해 받은 느낌을 작가님과 만남에서도 느낄 수 있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자인 저도 한 편 뽑아봤습니다. 작가님은 어렵지 않게 3편을 뽑아주셨는데 저는 정말 어렵더군요. 여러 편을 두고 망설인 결과, 가볍고 유쾌하지만 진중하게 살아가자는 다짐으로 2013년 11, 12호 '그림자' 그림을 뽑았습니다.

"그림자가 있어야 '안정감'이 완성되듯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그늘과 우울'이라는 그림자가 있어야 현실감과 존재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 아닐까." ☹☹





#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는 그만! 영화 <트럼보>

허재필 홍보팀 간사  
heojp044@ccej.or.kr



▲ 영화 '트럼보', 2015년 작품

## 미국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매카시즘이 1940년대 미국을 덮쳤다. 이러한 광풍은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다는 구호와는 상관없이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무고한 사람들이 혐의를 뒤집어쓰고 직업을 잃었으며, 심지어 투옥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조차도 매카시즘 앞에서 무용

지물이 되었다.

미국 영화계에도 매카시즘이 휘몰아쳤다. 내로라하는 찰리 채플린조차 매카시즘의 탄압으로 미국을 떠날 정도였다. 영화계에서 300명이 넘는 배우, 작가, 감독들이 비공식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생업을 잃었다. 할리우드 유명 작가 '달튼 트럼보'도 이러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 <트럼보>는 작가 달튼 트럼보를 통해서 당시 미국의 참담했던 영화계 블랙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트럼보는 어떻게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했을까?

“난 우리나라를 사랑해, 관찮은 정부지. 하지만 더 나아진다고 나쁠 건 없잖나?”  
(영화 속 트럼보의 대사)

영화 속 트럼보가 보여주는 신념은 명확하다.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영화계 세트 건설자를 위한 파업을 함께 하고, 권력이 영화산업에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 직접 행동한다.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직접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비록 신념의 결과가 '영화계 블랙리스트'라는 낙인과 감옥 생활로 돌아오더라도 그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트럼보는 공짜로 감옥에 갑니다.”  
트럼보는 감옥에 가면서도 유쾌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

## 그가 세상에 한 방을 날리는 방법

블랙리스트는 무척이나 힘든 시련이었다. 누군가는 동료에게 거저 누명을 씌우고 살아났고, 또 누군가는 생계가 끊겨 목숨을 잃기도 했다. 트럼보에게도 시련이 왔다. 감옥, 그리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졌어야 했고, 또 본인의 이름으로 작가 일을 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트럼보는 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트럼보가 세상에 반전을 만드는 방법은 명확했다. 블랙리스트로 할 수 없게 된 작가 일로 다시 인정받는 것.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다시 영화 대본을 쓴다. 그렇게 트럼보는 가명으로 영화 <로마의 휴일>

과 <브레이브 윈>을 써서, 아카데미 각본상을 획득한다. 나아가 영화 <스파르타쿠스>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트럼보는,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바보같은 것이었고 또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직접 말해주면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에 큰 한방을 날렸다.

## 상처뿐인 블랙리스트,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영화 <트럼보>는 한 상 가득 차려진 자연밥상과도 같은 영화다. 위트로 가득 찬 이 영화는 재미뿐만 아니라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 준다. 우선 영화는 신념을 가진 한 개인이 거대한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보여줬다. 세상과 싸우는 건 엄청난 장기전이었지만, 트럼보는 '가족'과 '공정'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낸다. 영화를 보다보면 다시금 내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영화 <트럼보>가 다루는 블랙리스트, 우리에게 너무나 와 닿는다. 지금도 우리는 블랙리스트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는 현실에 살고 있다. 영화 <트럼보>는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세밀하게 보여줬다. 누군가 부당한 수사를 받고, 실직하고, 파산하고, 가족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광기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블랙리스트, 그 비극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 2017. 08

- 08.01**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대한 경실련 입장  
남경필 지사의 부실시공 업체 선분양 제한을 환영한다
- 08.0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8.04**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땃글 부대' 운영, 이명박 정권의 정치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 08.09**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
- 08.10**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08.16** 문재인 정부 100일, 베를린 구상 성공을 위한 진단과 제언 토론회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 08.17**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 08.21** 청탁금지법 완화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08.22**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 08.23**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1.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 08.24**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08.25**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여 모든 진실을 규명하라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08.28**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 사고 관련 경실련 입장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진단 토론회
- 08.29**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2. 값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확대  
개헌 과정에 국민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 08.30**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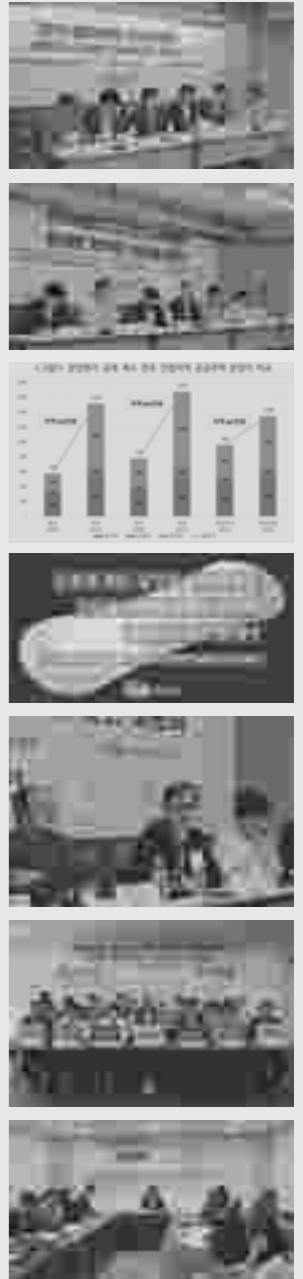


- 08.31** 혼다의 녹 투성인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하라  
2017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40대 개혁법안' 발표



## 2017. 09

- 09.04** 계란 밀집 사육 방식을 청산하고 유기축산을 확대하라  
KBS, 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력 규탄 한다  
농촌진흥청의 GM작물 생산중단 선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9.05**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자유한국당은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정기국회에 즉각 복귀하라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인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라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 09.06**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3. 기본형 건축비 인하  
29개 주요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열람실태 조사결과 기자회견담회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MBC 적폐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  
개헌 논의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
- 09.07** 과기정통부에 '공공 wi-fi'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  
사드 배치 강행을 강력히 규탄 한다
- 09.11** 신안산선 논란,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국방부 셀프 조사로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 할 수 없어  
식품 및 의약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09.12**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 09.13**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거품 제거 위해, 보유세 도입해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 09.14**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 정책토론회
- 09.15**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국회는 부실시공 방지위한 감리대가 예치제 입법화 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 09.18** 모든 선분양아파트는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09.19**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제화하라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한 결정



## SNS에서 많이 본 이슈

###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제화하라!

지난 9월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꾸준히 공수처 설치 운동을 진행해왔던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경실련의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수사, 특검은 했으나 검찰은 못 했죠. 권력비리와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평택국제대교 상판붕괴, 또 후진국형 인재사고 발생

지난 8월 26일, 평택국제대교 건설공사 중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엄중처벌하라는 경실련의 입장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개헌 논의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의가 정작 국민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개헌전국 순회토론회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만, 정작 국민들의 참여는 제한된, 말그대로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앞마당에 설치된 개헌발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개헌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없이 제대로 된 개헌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의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 신입회원 한마디 "반갑습니다! 회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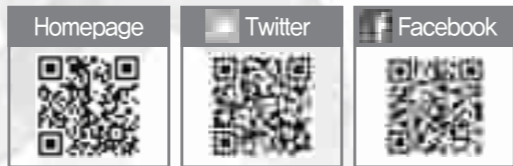
조강훈 | 정경유착없는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를 원합니다.  
 강병철 |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그날까지  
 김선필 |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작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메일 news@ccej.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cejstc

전화번호 02-766-5627~5628



##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 117명, 가입일 : 2017년 7월 13일~9월 20일)

강귀덕	권영화	김수자	김은미	나홍덕	방진홍	신숙진	윤경일	이윤호	정문섭	주상중	한규일
강병철	권은경	김순옥	김은수	남동현	방호창	신언관	윤미숙	이은숙	정연미	주옥규	한종해
강창수	권태윤	김영록	김은임	노광해	백정순	심동준	윤철한	이재인	정진우	차은숙	홍영식
고순생	김길락	김영철(일허스님)	김일기	대전도시공사	서상섭	양유정	이경우	이주영	정혜경	지현도	황대호
고지숙	김동우	김영필	김정자	박민자	서호영	엄자부	이광훈	이중하	제수경	진중헌	황범하
공양석	김미정	김영학	김태훈	박선미	손술이	오길영	이미경	이창복	조강훈	차봉기	황분희
곽병미	김병재	김예은	김향희	박성덕	송경섭	오창길	이상협	이중우	조성훈	채준하	황황욱
권광윤	김선필	김용철	김혁동	박성진	송광희	유동호	이석석	장선	조인형	최수만	
권성빈	김성민	김우경	김현조	박익일	송금옥	유애지	이성환	정경순	조철제	최종민	
권영국	김성훈(2)	김원재	김형욱	박해식	송영배	유영익	이순곤	정구봉	주광애	최철호	

중앙경실련	강혜정	구성찬	권찬	김근철	김명균	김사길	김세준	김완래	김윤식	김정석	김주현
	경규현	구수정	권철민	김근초	김명기	김삼수	김세중	김완배	김용	김정수	김주호
강경수	경민수	구은경	권혁근	김금숙	김명임	김상용	김세진	김완욱	김은경	김정신	김준
강내원	계충미	구자범	권혁민	김공태	김명철	김삼철	김소라	김용남	김은경	김정욱	김준식
강대수	고강석	구찬희	금동섭	김기숙	김명호	김상겸	김소희	김용석	김은섭	김정웅	김준영
강덕순	고경일	권경우	김갑수	김기열	김명환	김상균	김수영	김용섭	김은수	김정진	김준호
강두현	고석주	권규향	김건호	김기환	김무준	김상덕	김숙희	김용숙	김은순	김정현	김지연
강미야	고성순	권기대	김경낙	김길락	김문환	김상범	김승보	김용술	김은영	김정현	김지영
강만성	고영일	권기범	김경모	김남덕	김미자	김상영	김승하	김용식	김인곤	김정호	김지현
강명구	고영희	권동현	김경민	김남수	김미진	김상우	김승현	김용재	김인봉	김정호	김지혜
강민구	고음	권득용	김경배	김남훈	김민수	김상희	김시연	김용지	김인숙	김정호	김지호
강병철	고유환	권봉철	김경생	김대균	김민식	김생수	김시원	김용철	김인영	김정훈	김진
강선미	고은주	권삼용	김경수	김대선	김민연	김서현	김양규	김용태	김인철	김제천	김진경
강성일	고은진	권상현	김경수	김대성	김병각	김석환	김양수	김용하	김인태	김제후	김진구
강성중	고정희	권수복	김경아	김대중	김병구	김선옥	김양진	김용현	김일수	김종걸	김진만
강원호	고지석	권순범	김경준	김대진	김병수	김선필	김영대	김용호	김장철	김종구	김진명
강은석	고지숙	권순식	김경철	김대현	김병수	김선희	김영미	김우비	김재구	김종근	김진섭
강은현	공병욱	권순용	김경환	김대호	김병장	김성균	김영섭	김우영	김재구	김종덕	김진수
강일환	공양석	권순탁	김관영	김대훈	김병재	김성래	김영순	김원석	김재기	김종록	김진아
강주현	공정표	권영준	김관용	김도형	김병조	김성민	김영실	김원재	김재길	김종목	김진영
강지영	공진하	권영진	김광배	김동규	김병주	김성수	김영은	김원태	김재열	김종민	김진영
강창걸	곽기훈	권오진	김광수	김동영	김병주	김성수	김영은	김우룡	김재원	김종배	김진현
강창구	곽세별	권용습	김광훈	김동욱	김병철	김성욱	김영일	김유신	김재일	김종섭	김진화
강창균	곽의영	권용희	김국주	김동울	김병철	김성일	김영재	김유진	김재하	김종찬	김진호
강창훈	곽일환	권윤경	김군수	김동진	김병학	김성중	김영주	김유찬	김재홍	김종혁	김진동
강철	곽지용	권윤학	김규범	김동호	김병호	김성철	김영준	김유환	김재화	김주규	김찬석
강철규	곽효석	권일민	김규영	김래관	김보경	김성태	김영준	김윤기	김재환	김주목	김찬형
강철승	곽희남	권준기	김규훈	김만기	김복환	김성필	김영철	김유두	김정국	김주영	김찬호
강대철	구경이	권준석	김근수	김만수	김봉규	김성호	김영철(일허스님)	김윤석	김정돈	김주영	김창균
강현신	구태영(공제협)장	권준우	김근식	김만호	김봉진	김세정	김영철	김윤섭	김정민	김주중	김창범





홍성진	김혁	김영	이정아	박인동	김항식	정현석	김영우	손성미	전갑생	김광진	박임관	진진대	고영원	김재성	박은경	신혜정	이양희	조해성	고형석	나성영	선종아	이승노	정원채	
홍성환	노영록	김재령	이제선	서경수	노영성	조우현	김원용	손은희	전기풍	김구영	박치만	정병열	고완철	김정	박재철	신혜진	이연주	조화영	공수현	나홍덕	설상욱	이연	조광득	
홍순영	문인철	김재익	이주희	신희권	박상덕	진수환	김잠이	손정식	정보건	김기석	박태광	정복근	고재원	김정숙	박재희	심상록	이연숙	조흥식	구희선	노희정	성인규	이영기	조교영	
홍승우	박상안	김종인	이창수	심재원	박운남	최규천	김정주	손진일	정석윤	김기중	반정희	정석호	고형복	김종임	박정선	심혜진	이영신	주태진	권충화	류한호	소병환	이은방	조선익	
홍영희	백승호	김종길	이현주	유주상	박웅섭	최복규	김종태	송수영	정선우	김동명	배의용	정연권	곽도훈	김종진	박정욱	안경애	이영희	지미선	기우태	명노민	송선만	이을용	조성식	
홍오성	백종호	김준현	이희승	이대순	박인재	최승길	김종혁	송오성	조승재	김동우	서선자	정용욱	곽은	김진경	박종기	안철환	이원영	진장호	김경현	모현숙	손점식	이인수	조인형	
홍인표	성호준	김철홍	임경수	이덕우	박종시	최소희	김종현	신미경	조오현	김동한	서영기	정훈영	구교형	김진숙	박종미	양금석	이윤식	차성미	김광영	문정찬	송광운	이재석	조재곤	
홍종학	손창민	김태호	임영희	이명근	박지호	최승룡	김철관	신미애	조하영	김만규	서흥기	제수경	구차환	김탄일	박주한	양기대	이은경	차정운	김기보	박광복	송원식	이재윤	조현지	
홍종화	송운학	김형욱	임창규	이순기	반태연	최은송	김창집	신부연	지영배	김동룡	손경익	조덕수	권도형	김학준	박준서	양승오	이은영	최경화	김기홍	박남규	송윤주	이정근	주경남	
홍준표	여은미	김호현	임형백	이영길	배정순	최종문	김종근	신용호	진성우	김병수	손성목	조영화	권순남	김현정	박진기	양정현	이은재	최문교	김길현	박병규	송태석	이정량	주호연	
홍준현	윤언철	나인수	장명진	이지연	서은주	한동준	김판열	신찬숙	진희재	김보성	손수호	조희창	권혁이	김현정	박진석	양철원	이재춘	최미근	김남수	박병기	송형일	이정주	지영순	
홍진구	이덕호	노두승	전은호	이진	송문길	한실림김영생김영동김영희	김판희	안미나	최삼주	김부석	손영태	주상중	금강정사	김현희	박춘선	오명희	이정희	최미영	김동현	박병일	신재안	이정학	지병근	
홍창기	이혜란	노용래	정성훈	이창수	송민석	홍진원	김필성	여정애	최선중	김성우	손용락	지병구	김경태	김혜정	박태준	오민석	이종호(상허스님)	최상철	김문수	박상원	신주환	이종성	지현도	
화강윤	임효창	도선봉	정애리	이태호	송재석	황은남	김한기	오성관	최병중	김연옥	송성수	최민경	김경표	김효숙	박형근	오성남	이종석	최철규	김미남	박성수	심재훈	이종택	차현승	
황경복	정길재	류성룡	정인환	장영	신미영		김현호	오순혜	최운용	김용철	신수철	최병철	김경화	김희수	방소현	우동훈	이현우	추규호	김병철	박수인	안병물	이학균	채인기	
황광열	정홍준	류종석	조돈철	장윤정	신성진	거제경찰서	김호영	육근호	최윤숙	김우경	심정보	최상호	김기영	남기표	배권식	우병실	이혜수	하숙례	김상국	박양우	양동윤	이형호	천재영	
황기명	천미림	민병기	조우현	장진영	신승춘		김호일	육방호	최정환	김정제	안재철	최성희	김남권	남윤화	배덕현	원범재	이혜진	한금희	김성일	박옥관	양영희	임기춘	천형욱	
황대중	최재윤	박경남	조재형	전종찬	심규만	강경수	나기석	육총석	한기수	김창호	양철영		최암	김남현	노병일	배준	유수연	이호석	한상미	김수영	박웅	양진환	임동훈	천홍석
황민호	하능식	박상위	최강림	정경수	심윤보	강성배	나양주	육혁수	한은진	김철년	오영석	최인찬	김남희	노신복	변미애	유현지	이호열	한윤선	김순재	박이화	양해령	임성태	최영남	
황선영	홍창식	박성우	최두호	조영관	심한섭	강윤영	남기원	우정숙	한인숙	김철수	오현욱	최임석	김다솜	노용래	변한주	유흥우	이호성	한홍기	김양두	박정열	엄창수	임숙경	최윤석	
황선용	황은경	박연환	최명철	추승우	양창훈	강정숙	남덕희	원순실	한장용	김종로	왕서정	최정희	김동범	노혜숙	서방자	윤승형	임삼례	허기용	김양지	박종근	여상규	임영범	최윤정	
황선원	황정호	박영웅	최병선	하성용	원경숙	강정호	남원식	원종태	허추구	김태걸	우호식	최춘자	김미란	노희준	서삼례	윤종미	임진희	허정호	김영규	박종철	오경례	임정훈	최정규	
황선영		박정윤	최윤정	윤도현	강지은	남희정	유차상	허희경	김해숙	윤병길		최현익	김민재	류미숙	서순자	윤진원	장영기	허종은	김영길	박준근	오미정	임정휘	최주영	
황영미	도시개혁센터	박찬우	최정우	강릉경찰서	윤성원	강창수	노재남	유천업	현정임	김향희	윤상연	최홍배	김봉화	류정희	서용원	윤철	전광섭	허창순	김영환	박찬숙	오승재	임종철	최진규	
황유경		박희정	허동익		윤순모	강학도	노재천	유태영	홍성태	김현근	윤정수	최환호	김상미	마이인	서유리	이강순	전종석	홍은선	김용태	박창기	오치홍	임한필	하주아	
황이남	고일두	배용규	하성규	고석태	이광중	경명자	류금렬	윤강원	황분희	김현철	이관	한동훈	김상열	문종철	서은경	이금숙	정도환	홍진호	김인수	박창수	유방실	임형재	한국법회중앙회	
황이숙	공병준	서민호	함승희	고재정	이귀녀	고석진	문상필	윤길정	황정득	김형기	이상수	한성우	김선호	민찬식	서이석	이기영	정민정	황동식	김일술	박창현	유영표	임형철	한명석	
황인구	곽도	서순탁	허도한	구광범	이규송	고영주	박광호	이경희		김형수	이성민	한순희	김성자	박경옥	서태원	이길숙	정병오	황인란	김일호	박철웅	유현	정의수	한샘	
황인선	곽충삼	신행숙	현철재	권상동	이숙희	권민호	박대기	이광재	경주경찰서	김형환	이성조	한옥련	김소윤	박계량	석학주	이로사	정상영	황재연	김재석	박태규	윤두중	장익	한신규	
황인찬	구자훈	심준신	황희연	권오석	이요한	권영화	박영욱	이산학		김홍국	이수우	황도연	김수연	박광수	성운경	이말복	정선유		김재중	배백호	윤봉란	전창주	한희주	
황정국	권영진	양우현		김남두	이윤일	기산종합건설(주)	박성호	이상귀	(주) 신화종합건설	김홍기	이수향	황진환	김수진	박문경	성인숙	이명숙	정애숙	광주경찰서	김재찬	배용태	윤봉영	전홍모	허기석	
황철진	권일	원두영	시민권익센터	김남영	이정임	김경섭	박수정	이상미	강명근	도형수	이영화	후안뱅크(주)	김승복	박미경	손선주	이미경	정은영		김정훈	백석	윤영수	정강택	허문수	
황현석	김경희	윤재용		김동명	이제영	김경수	박순옥	이상천	강병찬	마태근	이운주		김애란	박미영	손솔이	이미희	정인애	(유)용진에너지	김종재	백익순	윤원진	정두석	허탁	
황호식	김광만	이동근	김강준	김봉래	이주석	김대봉	박애숙	이성호	고유승	문성현	이유형		김연옥	박미정	송경섭	이민지	정중환	(주)대한가스산업	김주현	백종기	은광석	정병호	형민우	
황효열	김금옥	이만희	김상현	김석래	이지은	김민수	박용안	이양식	고주현	박귀룡	이인형		김영근	박미화	신가람	이병렬	정지선	(주)영암마트	김지인	버스조합	이강천	정상문	홍영신	
황훈주	김기성	이명수	김석기	김선정	이진아	김삼기	박인근	이외자	곽정섭	박봉찬	이재인	(주)테리서아일랜드	김영미	박인관	신동렬	이병순	정하준	(주)해양도시가스	김철현	변동철	이기만	정용완	황덕자	
황희정	김덕기	이병준	김영미	김재부	이호숙	김삼일	박준기	이은경	권광윤	박상민	이정윤		강성철	김용관	박인영	신민선	이병철	정학균	강신주	김해룡	변원섭	이길남	정원태	황동현
	김도영	이상협	김태경	김재준	장선애	김석준	박추홍	이장명	권기흠	박성준	이종대		강신재	김용길	박복임	신복인	이복자	정혜경	강은섭	김현	변재영	이동민	정은수	황보관석
경제정의연구소	김동식	이순배	김태룡	김정근	전방욱	김선심	박태원	이장표	권오현	박성진	이지애		강옥영	김원선	박상윤	신선영	이부순	정희균	강정미	김현모	서민호	이명규	정일용	황윤용
	김미경	이양재	김택성	김진숙	정광민	김성진	반영진	이정택	길종구	박세영	이창안(철우스님)		강옥희	김윤권	박성배	신성은	이상봉	조범상	강현수	김현석	서상기	이봉주	정중현	
강명철	김석기	이유미	김현아	김진욱	정석중	김세린	백세정	이종우	김가형	박세정	이충웅(성타)		강윤숙	김윤옥	박성영	신숙진	이상숙	조상희	고근	김현중	서상기	이상걸	정진철	구미경찰서
곽수근	김성수	이은재	나태균	김태희	정세환	김수현	백순환	이철용	김경대	박옥선	임보향		강주례	김윤재	박승원	신영옥	이상진	조아라	고려가스(주)	김현철	서수연	이상각	정찬용	
김소연	김세용	이재문	대호관세사법인	김형경	정의호	김순옥	백승일	이형로	김경아	박용대	장은주		강찬호	김윤희	박영훈	신윤철	이승재	조은하	고려가스(주)광주	나미영	서재형	이성근	정혜경	강명천
김지환	김수삼	이정식	박병식	김형근	정의훈	김승한	서주중	장석주	김경호	박의일	전용범		강희규	김은진	박옥남	신은숙	이승봉	조태섭	고영삼	나병철	서해자	이상길	정혜련	강승수

경기경인

2017년 9. 10일



강신웅	박주영	정택근	박정민	김종열	이중기	김성민	김현수	손승환	이연재	조정학	김동철
고영호	박형진	정택동	박중수	김중현	이중준	김강식	김현조	송상수	이용세	조천호	김명경
구자근	백승국	조경래	박평식	김진희	이중재	김경민	김효진	송영식	이윤호	주태환	김명제
권구일	변창우	조현수	박희찬	김창집	정일환	김대식	나승춘	신영섭	이장수	진연수	김명주
권보	소평진	주광정밀(주)	석경수	김형창	정희상	김대진	나영희	신홍권	이재민	차진근	김병국
권순서	송창호	지대근	송정복	남기후	조승현	김도영	남동강	심병철	이정웅	최동학	김상환
권윤택	송철원	최근애	심상선	남익선	조용문	김도한	남동헌	심준섭	이종경	최우곡	김성민
길윤옥	신미정	최낙렬	심재숙	도현순	조용식(영신한의원)	김도형	남윤환	안영석	이지영	최원아	김성용
길호양	신주식	최선호	안중호	류문식	조종석	김도형	남인철	안정향	이진태	최은영	김양호
김경훈	심재필	최연호	양해택	류승범	주희(대한권리대변)	김동석	노영희	안화석	이진현	최종만	김영기
김귀화	양진오	표상욱	유애순	문태식	채신자	김동철	노윤경	양우준	이진희	최준호	김영주
김낙관	엄상섭	하영백	이경은	문현미	최영미	김명수	대성에너지(주)	양원규	이창건	최지원	김영희
김도형	오영재	허진	이광석	민경환	최재웅	김명혜	류규하	엄봉훈	이창용	최한경	김욱
김동욱	윤달근	홍인수	이상운	박광근	한성식	김무중	맹일영	엄인용	이해숙	최현석	김원희
김문환	윤상훈		이상춘	박만호	한재혁	김문한	문인수	에스제이건설(주)	이형태	하경태	김은주
김보준	윤종석	군산경실련	이석진	박병돈	한해경	김미화	문호상	여우현	이희영	하순화	김응배
김봉교	이관순		이선덕	박삼석	허우섭	김민석	박경욱	여은상	임종오	한상인	김인철
김연고	이덕수	(유)은파정보문화원	이유실	박영훈	홍석만	김병규	박동환	여택동	장석희	허남렬	김재경
김요나단	이명숙	강항근	이중암	배건웅	황인문	김상돈	박병준	우동락	장우석	허인설	김재석
김윤희	이명희	고개근	이희재	백종일	황인순	김상진	박병호	우형택	장은숙	홍희청	김종하
김은희	이미경	고덕영	임구원	신명순		김선완	박승철	유성근	장철규	황광석	김주홍
김인순	이미숙	김영혜	정순환	신상천	대구경실련	김선희	박영식	유성호	정해열	황귀선	김진숙
김재욱	이상도	박은아	전균섭	심상용		김수원	박은영	유영여	장호경	황병일	김창근
김재훈	이상철	심규만	정경조	안철환	(주)내커뮤니케이션즈	김신호	박종률	유영환	장호열	황영철	김창숙
김중배	이영애	정동원	조용석	안호열	감신	김영권	박종익	유영근	전상훈	황정현	김춘길
김중윤	이원재	주인철	조재용	양영재	강연환	김영모	박종철	윤태우	전성욱	황중숙	김중신
김준희	이원희	최웅	차숙희	여중석	경희창	김용두	박준상	윤현식	전영선		김태연
김진억	이정건	페이퍼코리아	최경용	엄선덕	계양앤진	김용찬	박진수	윤홍식	전재호	대전경실련	김태현
김철광	이제수	홍판표	최종식	오미애	종합상사	김용철	박치상	이강태	정경선		김태형
김현미	이종률	홍기원	하수진	오홍미	공영선	김윤호	박한승	이경민	정문정	(주)동그랑	김태호
김휘연	이창형		한성수	웅심이칼국수	공재식	김재범	박해식	이경탁	정성윤	(주)마루농산	김태훈
김휴진	이태동	군포경실련	호희국	원용벽	곽덕환	김정렬	배병두	이경화	정연욱	(주)해마음푸드시스템	김현조
김희덕	임은기			유영록	곽동주	김종웅	배석운	이근원	정영모	강다은	김현하
김희철	임주석	곽윤열	김포경실련	윤명자	권기억	김종태	배은정	이노수	정영은	강명자	김형태
나효훈	장기태	국정아		윤미숙	권기혁	김종태	변부형	이미정	정은숙	강병규	김혜천
노상진	장문석	김대욱	(주)신원렌터카	이경화	권대우	김지현	서정결	이병화	정재근	강재규	김홍숙
라병희	장세광	김동별	김명자	이경희	권동일	김진호	서정욱	이봉우	정제영	고나현	농협(법인)현채식품(주)
박성도	장종길	김동조	김남규	이금순	권병훈	김창수	서종철	이부용	정창길	구범림	대전도시공사
박성표	장준우	김석현	김두관	이기형	권오숙	김천일	성영락	이상록	정태완	권은남	도남선
박순이	장훈성	김연승	김문경	이두열	권오준	김태선	성윤상	이상천	조락현	권철명	명을식
박영주	전윤한	김영수	김미자	이부형	권윤집	김태수	손광락	이상필	조방희	김기남	문경재
박응도	전호갑	김영희	김영로	이재홍	권태윤	김태우	손상호	이상화	조상제	김기범	문정수
박재욱	정제봉	김중수	김옥순	이정규	권택중	김태환	손상훈	이선혜	조용원	김길순	박경오
박정구	정진수	김창호	김용훈	이정수	권휘동	김해철	손수익	이성철	조인지	김동선	박근영

박기남	유병한	정우택	강주천	박석일	오승주	조영교	강인중	김백철	김용원	김태구	박미영
박기용	유인규	정은선	권인철	박성일	오형열	조용호	강정규	김복근	김용원(2)	김태우(2)	박민우
박상훈	유인수	정인구	김경옥	박성진	원요준	조인수	강주하	김병기	김용필	김태훈	박병만
박성원	유현숙	정현재	김경철	박세훈	유경생	조준범	강종묵	김병용	김원태	김태희	박복용
박성진	윤주병	정희대	김관옥	박소영	유광호	차경아	강태문	김병하	김유경	김학진	박봉수
박영순	이건희	조성천	김광배	박승춘	윤치술	천병식	강필원	김보엘	김유석	김해몽	박상수
박종대	이계자	조용석	김광창	박순옥	이덕일	천재관	강현주	김복춘	김윤영	김해영	박석원
박준혁	이광자	조용태	김대근	박승채	이도홍	천현중	강형숙	김봉국	김은숙	김현욱	박선아
박희조	이광진	조윤제	김명숙	박승욱	이명희	최명숙	경규성	김봉규	김은영	김형권	박성수
방명덕	이문지	조철휘	김명진	박영웅	이문희	최병기	고명석	김부근	김인한	김형균	박성철
방정희	이범규	조항범	김명철	박용욱	이범수	최연식	고순생	김분이	김인환	김혜경	박성호(2)
배동국	이병승	조혜형	김문재	박인용	이병채	최완수	고인홍	김삼문	김장섭	김혜경(2)	박승제
백정웅	이성일	주정봉	김민희	박정석	이상권	최일	고재일	김삼수	김재명	김호범	박시우
서동국	이승용	정리(비영리)한국농수산	김보현	박정희	이성로	최재경	고정연	김상길	김재일(2)	김홍재	박영봉
서영석	이영수	지정배	김상원	박종두	이인수	최종명	공병승	김삼배	김재찬	김홍태	박영현
서영완	이용훈	진동규	김선실	박종범	이재광	최호길	곽원병	김삼욱	김재훈(2)	김홍취	박용주
서재열	이윤숙	진동섭	김성두	박종철	이재성	최환석	구명중	김상태	김정량	김훈	박용한
서정원	이윤행	차정민	김성철	박주이	이정진	하상복	구주영	김상호	김정민	김훈태	박재본
서준수	이인세	최경호	김수경	박창수	이종화	한상호	구효송	김석준	김정수(2)	김희곤	박재욱
서흥원	이재민	최경훈	김승호	박창윤	이찬식	한승주	국희원	김석호	김정숙	남경태	박재울
성기석	이재영	최낙구	김신규	박철수	이천호	한태연	권명섭	김선년	김정순(2)	남기찬	박재현(2)
손대근	이정(버리푸드)	최미경	김영태	박한호	이철수	홍국선	권범현	김선미	김정택	남영현	박재홍
송영환	이정구	최봉문	김예영	박해령	이한경	홍근표	권성빈	김성권	김정현	노경조	박정구
송유숙	이종범	최이성	김정민	박혁진	이헌중	홍석준	권오성	김성근	김종근	노상훈	박정숙
송인걸	이철은	최정환	김정아	박현희	이형오	홍순길	권재현	김성길	김종구	노영욱	박종덕
신상현	이학재	최정우	김중숙	박홍식	이형완	홍진표	권태섭	김성수	김종기	노일용	박종수(2)
신선호	이현대	한경이	김종익	배상기	이홍성		김가야	김성열	김종민	도한영	박주원
신창호	이현숙	한기평	김종호	백재봉	임종석	부산경실련	김갑환	김성춘	김종한(2)	류강렬	박진성
신현진	이형복	한성림	김창세	서이재	장미		김경일	김성태(2)	김주영	류윤희	박찬일
신희권	이화영	한성숙	김태중	송미승	장종국	(주)경성에너지	김경조	김성호(2)	김주현	류은영	박철중
신희영	임윤택	한화교	김태현	송영중	전종국	강경태	김경택	김성훈	김주호	류종성	박철한
심영주	장복수	황의달	김판조	송진호	전철균	강규성	김광식	김성훈(2)	김주희	류진호	박태주
안경래	장인성	황재익	김하성	송홍범	전철영	강대영	김길수	김성훈(3)	김준기	모상선	박한규
안병진	장형근	황해정	김홍석	송희진	정남준	강미라	김남시	김수미	김준환	문상철	박현욱
안영찬	장화식		김희환	신관용	정대철	강민석	김남일	김수빈	김지만	문상철(2)	박희영
안재준	전국진	목포경실련	노경윤	신재범	정명오	강민수(2)	김대래	김수자	김진	문윤순	박희정
안중훈	전영춘		명근홍	신주환	정삼수	강민정	김대중	김쌍우	김진영	문재천	방성애
오세윤	전학구	(유)민 의사생중진사업단	문영덕	심재경	정승임	강병석	김도	김영길	김진찬	민지훈	배광호
오원관	정대용	강남길	문준석	안영하	정영창	강병호	김동명	김영신	김진필(2)	박경주	배성훈
오중섭	정상배	강병국	민경준	양명희	정진대	강삼옥	김동호	김영욱	김진현(2)	박국순	배수미
오학석	정상훈	강병조	민찬홍	양승희	정평국	강성태	김명석	김영욱(2)	김창희	박도영	배용준
우금옥	정상희	강성태	박강일	양영주	정혜수	강시명	김문규	김영중	김철도	박동범	배해래
원용철	정승래	강영태	박근영	양판승	정호원	강예윤	김미경	김영호	김춘덕	박명식	배하숙
유병연	정예성	강제석	박문옥	여성준	조순형	강유동	김미향	김용섭	김태경	박미순	백대영





이병욱	최경숙	김연호	여병찬	정남선	김동채	한병세	김기열	김재임	박상욱	서은숙	여한수	이경화	이재용	장왕영	주상운	한영순	강정호	김수자	남종희	사단법인	윤미선	이찬우	정진오
이상현	최복수	김영선	여현정	정연준	김미순	한해광	김기은	김재홍	박상용	서재호	오근철	이광석	이재학	장원섭	주상운	한영옥	강태경	김승남	남지승	무지개	윤지희	이창숙	정창훈
이선희	최영화	김영환	염총	정영수	김성춘	홍춘식	김기태	김정범	박상임	서정순	오명환	이광세	이정길	장원주	지소연	한은상	고덕봉	김승진	남창섭	서경옥	윤호	이창훈	정희윤
이숙경	최운	김용란	오경아	정주영	김숙자		김길홍	김정수	박상천	서희숙	오병재	이광윤	이정숙	장재훈	지정철	한은상	고재성	김승희	남흥우	서부길	윤희정	이철준	조광희
이숙란	최윤정	김주남	오성탁	정하성	김영표	<b>이천여주경실련</b>	김대측	김정천	박상철	성주영	오석호	이광재	이정형	전상진	지효숙	한재수	고정규	김시철	노국진	서용성	윤희택	이종우	조동암
이양주	최임이	김주원	유기용	정혜경	김유성		김두환	김종복	박선규	성희연	오성순	이광호	이종승	전성호	진선중	한정민	공규현	김연옥	노승환	서주선	이강훈	이한용	조영희
이옥례	최재림	김지혜	유영표	조경송	김정선	강경모	김미혜	김종원	박선영	송경은	오성용	이기훈	이종원	전영석	진용상	한정현	구자길	김연옥	도영운수(주)	서태원	이경우	이현경	조용철
이용진	최현수	김진영	윤경일	조소연	김종구	강석림	김병기	김진영	박성희	송미정	오세린	이길수	이종한	전영애	차동환	한준학	권경자	김영구	도지성	서해안	이귀복	이현석	조용화
이용천	하은희	김창현	윤덕규	조재국	김헌태	강신욱	김병수	김진용	박수자	송영득	오형선	이길윤	이주윤	정병관	차준은	한준호	권남구	김영국	류병희	성기건	이기태	이현준	조자영
이정미	하혜경	김한일	윤성미	조춘선	나형선	강정순	김봉덕	김진창	박양래	송영득	우근배	이길윤	이준호	정선옥	채봉수	한준희	권대현	김영수	류제홍	성덕규	이길성	이형구	조현준
이정민	한미현	김현진	윤수영	조항욱	문봉호	강창영	김상실	김창균	박옥선	송은주	우순애	이대현	이종재	정성기	채홍철	한희자	권미정	김영옥	명선목	성용원	이다빈	이형수	지영일
이정아	한수연	김후승	윤정원	조현주	박병규	고경애	김선우	김창수	박인	송이식	우순희	이명신	이진관	정순현	천기영	함연자	권오경	김영준	명창준	손병옥	이덕환	이후삼	진혁화
이주옥	현유경	나진석	윤종대	조효미	박성현	고옥자	김선일	김춘자	박인오	송정호	우종만	이미희	이진혁	정승수	천병기	함연자	권오연	김옥산	목동훈	손창원	이도형	임강민	차경열
이창수	형천호	노국환	윤형로	진랑규	박숙희	고윤지	김선희	김태진	박일엽	송준규	우현녀	이백우	이천우	정용희	천재영	허림	권용희	김용구	문상범	송경희	이도희	임병구	차광윤
이천환	홍경남	류호웅	이광자	채 현	배선주	고인정	김선희	김학경	박재우	신계영	원경희	이백선	이창규	정옥형	최근우	허범석	권정호	김용민	민근홍	송문성	이동기	임승관	차동열
이해나(하용녀)	홍창표	박기두	이그루	채풍묵	서문석	공미선	김성국	김학재	박전희	신덕선	원종수	이복수	이창수	정우리	최대규	허수행	김갑봉	김우경	민동식	송원덕	이동현	임재훈	차득기
이희대	황연화	박민기	이길한	천귀선	서영남	구경혜	김성국	김현미	박전희	신동신	원종순	이부경	이창수	정윤지	최동규	허임범	김경원	김원화	박경호	송인선	이루다	임현준	최경훈
이희연		박석두	이대형	최갑주	서호영	구준모	김성길	김현숙	박정하	신동윤	유경윤	이상년	이천수	정윤희	최명섭	허임범	김경태	김윤태	박상찬	송태영	이린우	임희숙	최광용
임명자	<b>양평경실련</b>	박수경	이동연	최두영	송승하	권광일	김성애	김형식	박정화	신동천	유상열	이상원	이철희	정은영	최병주	허준환	김경호	김은경	박상희	신나영	이문의	임희진	최광은
임현규		박수형	이동준	최석운	심경택	권순원	김성완	김호열	박종구	신두임	유상희	이상태	이춘석	정은희	최복순	현주섭	김계원	김은영	박석민	신병철	이병열	장영현	최금행
장동근	김영희	박순영	이영규	최영식	심재수	권영미	김성재	김홍태	박종오	신영호	유승열	이상혁	이충일	정인우	최상동	홍경아	김관호	김응철	박성인	신영은	이병기	장일진	최두영
장동일	안영일	박옥경	이미순	최영준	안성용	권영배	김세동	남기태	박종욱	신완재	유영숙	이석환	이종환	정일구	최성원	홍성동	김광업	김인수	박수영	신은철	이병철	장정민	최병길
장미진	강대우	박은정	이병은	최창규	오경섭	권영진	김수동	남용대	박준모	신은순	유재경	이선	이판용	정정순	최옥명	홍원표	김광호	김재경	박소욱	신종한	이상동	전동춘	최상희
정명숙	강병국	박정수	이상진	추은경	오승석	권영훈	김숙현	노필원	박진형	신종욱	유재춘	이선정	이학수	정진학	최용철	홍은하	김근영	김재식	박시우	심정순	이상영	전성식	최성원
정세진	강신우	박태원	이수진	허윤희	윤주현	권오섭	김순업	<small>두레푸르향진사거리점</small>	박진형	신종욱	유학선	이상규	이한표	정춘화	최은실	홍종민	김기한	김재영	박옥희	<small>배려인보우인태내세설(주)</small>	이상진	전영우	최성진
정승현	강원정	박현일	이승용	홍성원	이문식	권진형	김순업	류성민	박창근	신철승	유혜란	이상훈	이해철	정하근	최인근	황경애	김남돈	김재욱	박용해	안동찬	이상훈	전영진	최인용
정안철	고혜란	배민병	이연호	홍성현	이식	권혁봉	김연희	류시근	박창근	신현숙	윤광석	이순창	이현호	제영기	최인식	황규문	김대중	김종길	박윤수	안병준	이상한	전용성	최재혁
정연주	권수연	배연정	이용성	홍승희	이유형	권혁왕	김영근	마상호	박창렬	심관보	윤남선	이승남	이현희	조경국	최재화	황규문	김동완	김종욱	박종석	안재근	이애경	전우진	최정자
정용기	권오병	서동일	이의현	황규영	이종원	금청하	김영자	마석홍	박태문	심규대	윤남용	이승현	이호영	조계만	최정관	황인동	김동우	김종호	박준용	안희섭	이연숙	전준권	최정철
정우혁	김경덕	서시은	이지형	황순찬	이철	기보중	김영자	마석홍	박태문	심형모	윤미애	이양순	이호일	조길문	최정숙	황인재	김동호	김종화	박진석	양광범	이우유	정기호	최준혁
정은수	김경수	서진숙	이정림	황영미	이평호	김 준	김영준	마세진	박형국	안병문	윤수영	이영우	이훈	조남술	최정화	황현숙	김명석	김준우	박찬화	양의만	이용준	정낙식	최찬용
정은식	김경희	성종규	이지연	황현주	임호상	김강산	김영춘	마애진	박홍재	안봉섭	윤수영	이영현	이희상	조병돈	최중		김명제	김진영	박태선	양희석	이은정	정두용	최현
정은혜	김광윤	송명원	이지은		장준배	김경건	김옥자	목현실	배경희	안신실	윤준호	이영훈	임명원	조생남	최중	<b>인천경실련</b>	김미경	김진희	박한정	엄연주	이의재	정미경	최혜자
정이진	김덕현	송요찬	이철규	<b>여수경실련</b>	정대훈	김경률	김왕근	문미자	배정수	안재영	윤태범	이옥희	임선미	조성복	최종악		김미영	김창우	박홍열	여승철	이일희	정석조	한기남
정정순	김동현	송진원	임승기		정승환	김경림	김용섭	문승욱	배중열	안정민	윤태범	이용근	임성규	조용월	최춘봉	<small>(주)진영엔자-최춘옥</small>	김병우	김태호	박홍철	오경환	이재학	정석환	한민승
정주호	김명주	신민희	장승희	강규호	정정식	김경자	김용태	문연래	변영구	안창호	윤항숙	이용만	임성식	조정래	최현희	<small>(주)한성라인</small>	김병철	김태훈	방수환	오광민	이재훈	정선오	함지현
정진욱	김명해	신소봉	장영달	강성훈	정주현	김경중	김우재	민승례	변정해	안철한	윤혜숙	이용연	임승한	조정숙	허맹수	강경하	김봉수	김하은	배성수	오원선	이정림	정승연	함창학
정철욱	김민섭	신승한	장은혜	강용원	정차섭	김경화	김운경	박경률	변정해	양정분	윤희태	이우정	임은혁	조종성	하태길	강덕우	김상길	김현식	배승희	유동현	이정욱	정영중	허도병
제종길	김민정	신정원	전미옥	고용국	정치훈	김광수	김용제	박경미	부태길	양희진	은종원	이운용	임철만	조철현	하헌홍	강명선	김상섭	김희연	배철현	유진성	이정윤	정원경	허우범
조경래	김선자	신희정	전승희	공성식	제성명	김광수	김은이	박기환	빈종진	어덕경	이강문	이윤숙	임한권	조춘순	한덕이	강명수	김상열	나영우	백동수	유홍성	이종일	정은식	허주형
조안호	김성민	안경모	전재은	권동채	제윤경	김광식	김은하	박영순	빈종진	엄기홍	이강수	이은자	임혁빈	조택선	한덕이	강상근	김선홍	나종팔	백민섭	윤관욱	이주영	정재영	허창희
조재기	김수은	안은경	전재현	권인홍	조현혁	김광인	김의섭	박명철	<small>사단법인에이트참원</small>	엄태희	이경수	이의성	장경자	조택선	한돈집	강석	김설	나종훈	변성준	윤대기	이주용	정재윤	홍기석
조충현	김소욱	안정희	전종덕	권진구	주춘	김금녀	김인기	박병건	서성원	엄희용	이경수	이익재	장교환	조한영	한만준	강석철	김성근	남봉현	변태수	윤동구	이준한	정지은	홍옥표
주만수	김양수	안태희	정경숙	김동식	천상국	김기석	김재순	박병대	서원교	여재혁	이경호	이재범	장영란	조휘영	한순택	강옥업	김성수	남세중	<small>사단법인 인천백영농협회</small>	윤명철	이진준	정진수	홍인식



황덕성	유창엽	정음경실련	고행곤	박재완	홍기홍	박미경	이종필	강민오	김광남	김송일	김재중	김호일	맹현숙	박지영	설경철	신희희	오영미	윤정수	이상중	이종원	임승빈	정상욱	조승연
황수연	윤영수		김강문	박정은	홍성화	박민숙	이종호	강병용	김광복	김수열	김재춘	김홍구	문성오	박진우	성기남	신해운	오영애	윤진현	이석구	이종윤	임용수	정성완	조영화
황용선	윤대영	강창조	김경웅	변성언		박민자	이철호	강병호	김광성	김수환	김재학	김홍성	문종극	박찬규	성창기	신현규	오영필	윤찬열	이석희	이종한	임용현	정성래	조용숙
황은우	은영주	고남용	김관식	변정철	천안아산경실련	박복연	임승안	강석형	김광직	김숙자	김정문	김한국	문희창	박창호	성현용	신현식	오제세	윤태한	이선미	이주봉	임은정	정성희	조원주
황제우	은용우	김용철	김광섭	부상원		박상면	장경식	강성래	김광희	김순구	김정승	김황래	민경덕	박철규	소순창	신희숙	오준영	윤한식	이선순	이주선	임일수	정수창	조윤행
	이민호	김은정	김광일	부윤삼	강민숙	박수석	장기수	강성호	김교선	김순영	김정웅	김호일	민광기	박철석	손세원	심규석	오창민	윤현우	이선우	이주형	임재경	정순배	조은애
전주경실련	이보향	김을수	김기훈	부인신	강용봉	박종갑	장원철	강영희	김규설	김승호	김정일	김희수	민선희	박철완	손윤희	심상학	오태경	윤혜정	이선희	이준수	임재규	정승희	조을선
	이선미	김택술	김남혁	송대영	강인영	박종복	장재식	강은희	김규원	김애영	김정초	김희숙	민승기	박현순	손정훈	심수영	오태진	윤호영	이성민	이준희	임종승	정연경	조일원
강원균	이승현	김현	김동욱	송석언	강태윤	박종선	전승례	강진성	김기영	김양식	김종구	나영구	민청식	박형배	손효진	심영미	오훈영	이가빈	이수복	이종섭	임지민	정연주	조정식
강유정	이영식	박래수	김동진	송승호	강희두	박태서	전오진	강현구	김길후	김연희	김종기	나채경	박관주	박호표	손희준	심진행	오희	이건철	이수영	이종원	임차남	정영래	조종호
강일영	이창춘	박영민	김동훈	신용현	고영술	박현희	전종한	강호문	김남진	김영근	김종철	남기상	박광수	박희분	송광희	씨투넷(주)	이상동	이경수	이수한	이종현	임한빈	정영섭	조항천
강창수	이재윤	송민수	김명준	신종은	구분영	백우현	정구봉	강호승	김대광	김영란	김종태	남대우	박금순	반영은	송길화	안병대	우장명	이경순	이순남	이종훈	임한수	정영희	조형규
강호수	이점수	이광호	김봉석	안영철	구자형	복아영	정미영	경준용	김대중	김영란	김종태	남성옥	박기환	반주현	송봉화	안영숙	우정순	이경희	이순호	이지숙	임현경	정우영	주서택
고동우	이정	이상길	김봉철	양문석	금명기	송용완	정병인	고금순	김동암	김영미	김주복	남성옥	박남순	배병기	송선호	안장현	원광희	이광식	이순희	이지영	임혜숙	정은경	주재구
곽이구	이주현	이상실	김봉희	양봉석	김경은	송홍석	정성진	고영구	김동욱	김영민	김준경	남윤빈	박영규	배상은	송은숙	안종태	유경훈	이광용	이승배	이지영	임희영	정은희	주재구
국승철	이현희	임영관	김부찬	양성주	김기태	신동현	정진선	고영재	김동일	김영배	김준기	남중순	박문희	배은환	송의천	안창만	유광식	이광희	이승준	이찬호	김경석	정인수	주재현
권미경	임규삼		김석	양시경	김길년	신영철	정치화	공공디자	김동진	김영식	김준년	네모토 마사쓰구	박미애	백미경	송일근	안태희	유국렬	이귀숙	이양우	이창수	장남운	정일기	주창백
김만식	임성진	제주경실련	김석범	양우선	김미경	안주형	정하진	인이름	김동형	김영재	김준수	노근호	박미영	백승협	송재경	양계인	유근수	이귀형	이연옥	이철중	장동대	정일택	지동규
김병석	장석재		김선호	오승용	김미수	양경모	조강석	곽규은	김두호	김영준	김준태	노만균	박민수	법무법인 주성	송재봉	양기정	유미숙	이규선	이영로	이철희	장병순	정정영	지유석
김성주	전기환	강경희	김성수	오영익	김봉미	양승조	조미경	곽나현	김말숙	김영진	김지연	노진호	박민순	변광섭	송중찬	양미선	유민상	이규호	이영숙	이태준	장병희	정재량	차은너
김수환	정구영	강금중	김성준	오영환	김상관	오수균	조영주	곽덕신	김명배	김영태	김진철	대신장(법률사무소)	박법혁	변만수	송태성	양승구	유선우	이기정	이영진	이학철	장선배	정준영	차인용
김용권	정상중	강봉석	김세검	오정훈	김상철	오승화	조하심	곽승호	김명수	김영환	김창석	도경민	박석현	변민수	송태화	양원철	유성훈	이길재	이영희	이한례	장영건	정지성	차태영
김용희	정세윤	강승환	김수남	오창현	김세곤	오인철	주진혁	구남휘	김명자	김영환	김천식	도선봉	박성순	변상태	송해근	양찬섭	유순영	이길환	이옥인	이한훈	장재봉	정지영	채희관
김장기	정태원	강인창	김수연	유덕현	김연	우승윤	주홍중	구안서	김문욱	김영희	김철	도승기	박성호	변상호	송효현	엄경출	유시승	이대응	이유정	이혜승	장호진	정진아	창주신(법률사무소)
김정길	조선환	강지용	김승필	유두석	김용진	유영길	최경식	권경미	김미라	김원희	김춘희	두깨실(법률사무소)	박세웅	변성민	신경아	에듀크리안트	유영경	이동로	이윤범	이향숙	장홍원	정진원	창주신(법률사무소)
김종원	조영범	강창균	김승훈	이성호	김종문	유진영	최경영	권기승	김미숙	김용규	김태성	디자인포커스	박연수	변은영	신경운	연규순	유영숙	이동진	이인우	이현수	전광호	정진하	창주신(법률사무소)
김주희	조찬완	강창식	김양보	이숙희	김종우	윤권중	최석남	권미경	김미숙	김용덕	김태성	라운애	박영미	변의수	신국희	연규용	유영아	이두영	이일만	이현수	전금식	정찬영	창주신(법률사무소)
김형식	주재호	강태운	김영희	이용민	김진국	윤일규	최신수	권성안	김미현	김용덕	김태준	류규식	박영미	변창섭	신규식	연방희	유옥순	이만형	이일우	이현식	전일자	정철	최각규
라형연	진정현	고경업	김용범	이태운	김진태	윤정섭	최창환	권수복	김민호	김용석	김태희	류근모	박영숙	변종윤	신동선	연영규	유응모	이만희	이장희	이현주	전년규	정중선	최경호
류충성	채주석	고광희	김우준	임숙자	김철수	이경숙	하종률	권영기	김병우	김용태	김평환	류근운	박영순	봉원진	신동예	연영태	유재일	이명순	이재덕	이형우	전동기	정태진	최광민
박규만	천상덕	고동철	김원규	임정현	김태명	이경원	한문식	권오건	김병의	김용학	김필제	류덕환	박용석	봉윤근	신동호	연인하	유주하	이명호	이재영	이혜정	전병선	정해영	최명섭
박명진	최낙용	고맹호	김익태	장원석	김관규	이경주	한형규	권오은	김봉주	김용규	김학구	류연옥	박용연	서건석	신명섭	연준	유철호	이명훈	이재영	이호상	전세식	정현순	최상범
박복희	최동성	고병기	김인영	정상철	김형조	이명근	허영	권태성	김상우	김원식	김학균	류용길	박은경	서길용	신명수	연철흙	유형열	이미선	이재원	이홍열	전용필	정희승	최상희
박상민	최문희	고봉석	김정수	조문수	김혜영	이병덕	허종일	기경희	김상수	김유미	김학민	류우열	박익규	서대석	신명숙	연호석	유현덕	이미순	이재원	이화연	전용표	조경주	최성희
박양림	최수진	고봉수	김중훈	조시중	김홍철	이상일	현선욱	김갑용	김선기	김유호	김학실	류재욱	박인숙	서미화	신범식	염우	유환철	이민영	이재은	이효숙	전우석	조경주	최영중
박호민	최요일	고상봉	김지연	채호진	김효실	이상춘	홍영식	김강일	김선영	김윤모	김한솔	류재형	박인자	서연숙	신성일	오경아	육미선	이범구	이재춘	임근철	전창해	조규완	최우식
성치원	최원영	고석건	김창기	한남석	나이란	이상호	홍영중	김건도	김선희	김은옥	김한태	류지봉	박재경	서완석	신승주	오국진	육종길	이범석	이정규	임근수	전희택	조규호	최원침
송악용	최정일	고석봉	김창순	한용환	내일시스템(주)	이서영	황종현	김건일	김성민	김용철	김현상	류진호	박재관	서우석	신연관	오명진	윤건영	이병관	이정석	임기중	정길재	조동순	최원호
심동희	최종렬	고성봉	김창연	한재철	노덕우	이선열	황천순	김경애	김성수	김인숙	김현주	류찬걸	박재익	서울고속(주)	신영구	오미정	윤관수	이병호	이정수	임동현	정란희	조동욱	최윤정
안수현	최진희	고영미	김철수	현경호	노순식	이수현		김경자	김성식	김인자	김현진	류학천	박정환	서준철	신영창	오병건	윤미정	이복순	이정아	임미애	정문섭	조상현	최은실
안정훈	한상호	고영수	김형진	현덕진	류임상	이승열	창주경실련	김경자	김성중	김일영	김형규	류현숙	박종관	서효석	신영희	오상록	윤병희	이상규	이정협	임병락	정미화	조성구	최재수
양창훈	홍순필	고영식	문건식	현영철	류지현	이원자		김경호	김성천	김재복	김형우	리드산업개발(주)	박종룡	석명용	신용재	오석승	윤상미	이상근	이종섭	임병원	정병숙	조성수	최재일
엄상섭	황병해	고정훈	박미현	현종철	맹창호	이점순	(주)세일	김계욱	김성호	김재숙	김형창	마재광	박종선	선종열	신철영	오세란	윤석위	이상복	이종수	임성진	정상섭	조성오	최정호
오상현	고태식	박승훈	현창석	명진아	이종욱	강대성		김관식	김성희	김재원	김호숙	맹석주	박종혁	선지연	신태경	오연경	윤승현	이상식	이종실	임성중	정상신	조수중	최종문



최종예	하재성	허석렬	홍응표	고태규	김진중	방수미	양태식	이석원	전성희	최희수
최종익	하태종	허성만	황경수	권용범	김한택	방수진	용준형	이승준	전양호	춘천상공회의소
최진옥	한범덕	허영	황락훈	길정숙	남형우	변용환	유제원	이원규	전운성	하상준
최진완	한상화	현상주	황미화	김광배	박경철	변좌용	윤장혁	이은영	전찬일	한희민
최충진	한수환	현진	황선건	김남철	박대진	변지량	윤재경	이인섭	전호성	함태성
최태호	한승환	형미희	황성주	김대영	박도수	석영기	윤재선	이종민	정의성	허영준
최현숙	한영선	홍강희	황영미	김석중	박미현	손현기	윤진현	이희창	정지만	허장현
최형도	한원영	홍석원	황종빈	김선배	박상규	손흥주	윤학로	임재선	정휘돈	허종영
최호균	한인섭	홍성학	황희연	김영준	박상렬	송창근	이관행	전규호	조성모	황덕호
표한홍	한정현	홍성학		김용식	박정근	신선철	이복연	전근우	조성자	황해숙
풍경식	함명옥	홍승표	<b>춘천경실련</b>	김정현	박형일	신혜숙	이상섭	전동준	진장철	
하옥란	함종철	홍우표		김진상	방명열	안호춘	이상철	전만식	최영진	

### 중앙경실련

<b>사무총장</b>	02-741-8566	윤순철	<b>사회정책팀</b>	02-3673-2145	간사: 박지호
<b>기획교육팀</b>	02-766-5626	국장: 김한기	<b>국제팀</b>	02-766-5623	간사: 정호철
<b>회원팀</b>	02-766-5627	부장: 채준하, 간사: 윤은주	<b>부동산국책감시팀</b>	02-3673-2146	국장: 김성달, 부장: 최승섭
<b>홍보팀</b>	02-766-5628	간사: 유애지, 허재필	<b>(사)경제정의연구소</b>	02-3673-2144	국장: 권오인
<b>경제정책팀</b>	02-3673-2143	국장: 권오인 간사: 최예지, 오세형, 이성윤	<b>(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b>	02-3673-2147	국장: 남은경, 간사: 김정훈
<b>정치사법팀</b>	02-3673-2141	국장: 김삼수, 간사: 정택수	<b>시민권익센터</b>	02-766-5624	간사: 권태환
<b>경실련통일협회</b>	02-3673-2142	간사: 조성훈	<b>소비자정의센터</b>	02-766-5625	국장: 윤철한
			<b>월간 경실련</b>	02-766-5626	이사: 음유정, 김용재

### 지역경실련

<b>지역경실련협의회</b>	031-253-2266		<b>충청권</b>		
<b>광역시</b>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이수희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김동현, 부장: 박수민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간사: 박은영			국장: 이병관, 유영아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부장: 서해림			간사: 김미진
부산경실련	051-761-3951	처장: 이훈진, 부장: 윤정선, 팀장: 배성훈	<b>경상권</b>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부장: 김성아, 팀장: 이경진	거제경실련	055-637-9451	국장: 이양식
<b>경기·강원권</b>			경주경실련	054-773-7851	부장: 김향희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b>전라·제주권</b>		
군포경실련	031-392-3111	국장: 오은정	순천경실련	061-751-9993	간사: 장홍영
수원경실련	031-253-2266	처장: 노건형, 부장: 유병욱	여수경실련	061-643-2110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김창모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규숙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상윤, 간사: 변정혜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간사: 고통우
양평경실련	031-772-2091	국장: 여현정	정읍경실련	063-536-6225	간사: 김은정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한섭	제주경실련	064-726-2530	간사: 김신숙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식, 부장: 정연미			
춘천경실련	033-636-6631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